
회의자료

10기 1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 2017.12.11(월) 09시

장소 : 경주 외동 성호리조트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회의자료 순서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3
대회사	4
격려사	6
축 사	8
상징마크	9
선 언	10
강 령	11
금속노조가	12
금속노조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13

보고자료

울산지부 9기 2년차 사업보고	21
금속노조 10기 1년차 사업계획 보고	42

안건자료

안건1호. 9기 2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71
안건2호. 10기 1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	121
안건3호. 10기 1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135
안건4호. 금속노조 10기1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143
안건5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147
안건6호. 10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153
안건7호. 기타 안건	157
안건8호. 결의문 채택의 건	159
<별첨> 울산지부 규정	161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1부 개회식 및 교육

개회선언	사회자
깃발 입장	사회자
민중의례	사회자
내.외빈 소개 및 임원 및 지회장 소개	사회자
10기 지부장 대회사	지부장
격려사	노조임원
축 사	내외빈
모범지회, 조합원 시상	사회자
공로상 시상	사회자
결의의 장	전체
금속노조가 제창	전체
교육	강사

2부 본회의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장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 지명	의장
회순통과	의장
안전토론	의장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의장
폐회선언	의장

대 회 사

대의원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지부 지부장 강수열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이겨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강화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았던 동지들의 노고에 지부장으로서 존경의 마음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부장 강수열

대의원 동지여러분!

국정농단 박근혜 세력을 끌어내리고 조기대선을 이끌었던 촛불의 힘은 노동자들의 노동악법 저지투쟁과 故백남기 농민과 수많은 민중들의 힘이 모였던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노동자 농민, 바로 민중들이 1700만 촛불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벌써 노동자들을,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나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지금의 정부 행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할 일이 끝난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해줍니다. 촛불의 힘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정세를 보면 10기 정세는 그야말로 격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원 동지들과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민주노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못 헤쳐 나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이런 정세를 울산지부는 제2의 민주노조 운동으로 돌파해 가고자 합니다.

과감한 변화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노동자 중심 진보대통합의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를 지켜나가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격동하는 이 정세를 뚫고 제 2의 민주노조 운동! 노동적폐 청산! 노동새세상 건설!로
나아갑시다. 투쟁!

2017년 1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강 수 열

격려사

대의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지만, 아직도 거리에는 투쟁하는 동지들이 생존권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싸우는 12월입니다.

촛불투쟁 이후 정세는 큰 역사적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18년은 선거와 함께 개헌국면까지 있어 우리 노조를 둘러싸고 정세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은 노조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응으로 교묘하게 나올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을 교정의 대상으로 여론몰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도 정책역량의 전문성을 다양하고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의 투쟁을 하더라도 17만 전체가 움직이는 준비된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속노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할 지부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는 2018년 투쟁을 큰 방향 차원에서 결의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사업의 핵심은 “변화”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변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변화는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이라서 낯설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속도보다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나서는 일에 2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집중과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18년은 특히 17만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에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금속노동자 총단결, 총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자랑찬 투쟁정신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직 내에 소통을 체계화하여 밑으로부터의 여론수렴과 근거 있는 판단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만큼 반드시 집행하고 평가하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부대의원 동지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된다는 평범한 속담이 현재의 금속노조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금속노조에는 우수한 활동가와 간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미조직화 전략사업으로 인해 초보활동가들도 나서는 등 금속노조는 꿈과 희망을 그리며 함께 할 구슬동지들이 서말이 아니라 곳간 가득합니다.

금속노조운동에 모범을 창출하여 새로운 전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창기는 열기 지도부 역할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속노동자 단결! 투쟁!

2017년 1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축 사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인사드립니다. 먼저 금속노조 울산지부 10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다시 한 번 중책을 맡으신 강수열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께 격려의 인사 전합니다.



국회의원 윤종오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고 20여일이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매해 다사다난했다 말하지만 올해는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쉬운 해고를 무력화시키고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를 폐기시키는 큰 성과를 이뤄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다 우리 금속노동자들의 선봉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지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청산해야 할 적폐가 남아 있으며 이번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에서 보이듯이 언제든지 노동법은 개악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정치세력화가 되고 진보대통합이 될 때 우리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땡벌 여름부터 이 추운겨울까지 새벽부터 나와서 투쟁해주신 금속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의원대회를 축하드리며 노동적폐청산, 제2민주노조 건설, 새로운 세상을 위해 도약하는 금속노조가 되길 기원합니다.

상 징 마 크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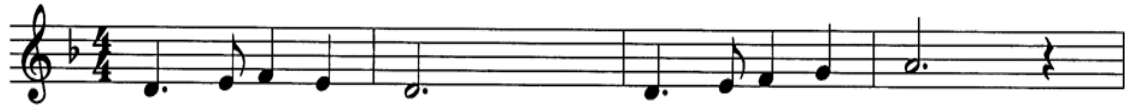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 동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깃 누 를 수 록 더 욱 강 하 게



당 당한 역 사의 함 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피 로써 뭉 처진 강 철의 대오 아 금 속 노 조 여



나 가 자 성 벽을 깨고 죽 음의 사 선을 넘 어
말 하 라 외 쳐 불 러라 민 중의 선 봉에 서 서



노 동 자 이 해 방의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등한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1	지부장	강수열
2	고강알루미늄지회	강태희
3	고강알루미늄지회	권석진
4	고강알루미늄지회	최민중
5	고강알루미늄지회	서병준
6	고강알루미늄지회	남태훈
7	고강알루미늄지회	이종호
8	덕양산업지회	이근주
9	덕양산업지회	정희태
10	덕양산업지회	황상진
11	덕양산업지회	양창석
12	덕양산업지회	박정열
13	덕양산업지회	장태철
14	덕양산업지회	신원철
15	덕양산업지회	김범섭
16	덕양산업지회	박천원
17	덕양산업지회	이복형
18	덕양산업지회	김대열
19	덕양산업지회	서영진
20	덕양산업지회	강우중
21	덕양산업지회	유휘종
22	덕양산업지회	김병훈
23	덕양산업지회	공석
24	덕양산업지회	공석
25	덕양산업지회	공석

순번	소속	이름
26	덕양산업지회	공석
27	덕양산업지회	공석
28	덕양산업지회	공석
29	덕양산업지회	공석
30	덕양산업지회	공석
31	덕양산업지회	공석
32	덕양산업지회	공석
33	덕양산업지회	공석
34	덕양산업지회	공석
35	덕양산업지회	공석
36	세종공업지회	구덕모
37	세종공업지회	추헌동
38	세종공업지회	박월영
39	세종공업지회	최우원
40	세종공업지회	황재윤
41	세종공업지회	손봉남
42	세종공업지회	김영창
43	세종공업지회	김위성
44	세종공업지회	강태영
45	세종공업지회	정대식
46	세종공업지회	송길선
47	세종공업지회	이병근
48	세종공업지회	강민우
49	세종공업지회	김진호
50	세종공업지회	강화순

순번	소속	이름
51	세종공업지회	임권식
52	세종공업지회	박병일
53	세종공업지회	김선주
54	세종공업지회	권오혁
55	세종공업지회	심재훈
56	세종공업지회	금득용
57	세종공업지회	이수형
58	세종공업지회	공석
59	세종공업지회	공석
60	세종공업지회	공석
61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김민기
62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박장수
63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채승용
64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정태종
65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유광수
66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박유주
67	한국TW울산지회	허세현
68	한국TW울산지회	임민제
69	한국TW울산지회	차헌철
70	한국TW울산지회	진용호
71	한국TW울산지회	이귀해
72	한국TW울산지회	오석근
73	한국TW울산지회	공석
74	한국프랜지지회	차주근
75	한국프랜지지회	김병오

순번	소속	이름
76	한국프랜지지회	박승봉
77	한국프랜지지회	김준호
78	한국프랜지지회	김진엽
79	한국프랜지지회	김정종
80	한국프랜지지회	구봉수
81	한국프랜지지회	전조환
82	한국프랜지지회	안지운
83	한국프랜지지회	김국남
84	한국프랜지지회	김홍한
85	한국프랜지지회	이승용
86	한국프랜지지회	이달희
87	한국프랜지지회	윤진선
88	한국프랜지지회	백희동
89	한국프랜지지회	정현재
90	한국프랜지지회	신대원
91	한국프랜지지회	공석
92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이기진
93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안주호
94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김태준
95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김원석
96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이상준
97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임형섭
98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김영수
99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공석
100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	공석

순번	소속	이름
101	서연이화지회	이영석
102	서연이화지회	박찬상
103	서연이화지회	임미숙
104	서연이화지회	박재연
105	서연이화지회	박 경
106	서연이화지회	김종해
107	서연이화지회	유영택
108	서연이화지회	안덕일
109	서연이화지회	이종술
110	서연이화지회	이평호
111	서연이화지회	김종현
112	서연이화지회	김창수
113	서연이화지회	김성중
114	서연이화지회	차흥우
115	서연이화지회	강찬엽
116	서연이화지회	이인형
117	서연이화지회	손현호
118	서연이화지회	김철수
119	서연이화지회	염성기
120	서연이화지회	공재근
121	서연이화지회	김고삼
122	서연이화지회	이재환
123	서연이화지회	황성현
124	서연이화지회	오영국
125	서연이화지회	김옥선

순번	소속	이름
126	서연이화지회	김효진
127	서연이화지회	공석
128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우남용
129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공석
130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영수
131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석
13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석
133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석
134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석
135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석
136	서연씨엔에프지회	윤성만
137	서연씨엔에프지회	정외숙
138	서연씨엔에프지회	이인범
139	서연씨엔에프지회	윤남수
140	서연씨엔에프지회	최성호
141	서연씨엔에프지회	김유수
142	서연씨엔에프지회	박국현
143	동진지회	김태균
144	동진지회	진홍영
145	동진지회	유민수
146	동진지회	정완식
147	동진지회	정성재
148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조병훈
149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임정원
150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차경호
151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고성철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10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자료

9기 2년차 사업보고

금속노조 10기 1년차 사업계획 보고

보고

9기 2년차 사업보고

1. 조직현황보고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6년 09월30일 (단위 명)

지회	월별	2016년	11월	12월	2017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 고
		10월			1월									
1	고강알루미늄지회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	덕양산업지회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28	528	528	
3	세종공업지회	484	484	484	474	474	474	474	474	474	473	472	472	
4	한국프랜지지회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39	339	339	
5	한국ITW울산지회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27	127	127	
6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42	142	133	133	132	132	133	132	132	155	155	157	
7	서연이화지회	469	469	469	472	472	472	472	472	472	473	473	473	
8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98	96	104	107	104	104	107	104	104	92	92	91	
9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89	89	89	89	89	89	89	89	89	93	93	93	
10	삼성SDI지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사고지회
11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21	22	22	21	20	20	21	20	20	17	15	17	
13	서연씨엔에프지회	114	114	114	115	115	115	115	115	115	118	118	118	
14	동진지회	133	168	176	126	126	126	126	126	126	84	83	83	
15	개별	18	15	8	16	12	6	16	12	6	22	19	11	
합계		2,682	2,713	2,713	2,667	2,658	2,652	2,667	2,658	2,652	2,636	2,629	2,624	

2. 회의보고

2-1. 운영위원회

9기 2년차 운영위 회의보고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50차	16/10/06	서연이화지회	안전1. 당면 투쟁 건 안전2. 법률소송비 지급 요청 승인 건 안전3. 신분보장 심의 신청 승인 건 안전4. 신규지회 설립 승인 건 안전5. 개별조합원 가입 승인 건 안전6. 투쟁기금 분담 건 안전7. 대의원 선거구 확정 건
51차	16/10/17	울산지부	안전1. 당면 투쟁 건 안전2.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조직화 계획 건 안전3. 개별조합원 가입 승인 건
52차	16/10/24	울산지부	안전1. 당면 투쟁 건 안전2. 울산지부 9-2기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일정 건
53차	16/10/31	울산지부	안전1. 당면 투쟁 건 안전2. 금속노조 제 42차 정기대의원대회 정기표창 추천 건
54차	16/11/07	한국ITW지회	안전1. 당면 투쟁 건 안전2. 금속노조 규약, 규정개정안 토론 건
55차	16/11/14	한국프랜지 지회	안전1. 당면 투쟁 건 안전2. 지부 9-1 사업평가 및 9-2 사업계획 토론 건
56차	16/11/17	울산지부	안전1.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집행 점검 건 안전2. 박근혜 퇴진 영남노동자대회 건
57차	16/11/22	한국프랜지지 회	안전1.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건 안전2. 박근혜 퇴진 총파업 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58차	16/11/28	북구 오토벨리 4층 회의실	안건1.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집행 점검 건 안건2.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점검 건
59차	16/12/14	울산지부	안건1. 당면투쟁 집행점검 건 안건2. 지부 쟁대위 해소 건 안건3. 이운남열사 4주기 추모집회 건 안건4. 개별조합원 가입승인 건
60차	16/12/19	덕양산업지회	안건1. 금속노조 9기 2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안건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건 안건3. 대선방침 및 정치전략 토론 건
61차	16/12/26	서연이화지회	안건1. 당면투쟁 건 안건2. 대선방침 및 정치전략 토론 건
62차	17/01/09	세종공업지회	안건1. 당면투쟁 건
63차	17/01/16	한국프랜지 지회	안건1. 당면투쟁 건 안건2. 개별조합원 가입 승인 건
64차	17/01/23	고강알루미늄 지회	안건1. 현충일반직지회 투쟁 지원 및 박일수열사 13주기 추모 건 안건2. 민주노총 성평등 모범조직상, 모험조합원상 추천
65차	17/02/06	한국ITW지회	안건1. 당면투쟁 건 안건2.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준비 일정 건
66차	17/02/13	세종공업지회	안건1. 당면투쟁 건 안건2.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대의원 배정 건 안건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조직 및 모험조합원상 추천 건 안건4. 지부집단교섭 투쟁방침 토론 건
67차	17/02/21	덕양산업지회	안건1. 당면투쟁 건 안건2.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준비 건 안건3. 자산 비품 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68차	17/02/27	서연이화지회	안전1. 동진지회 투쟁 지원 건 안전2. 지부집단교섭 의제 및 투쟁 방침 건
69차	17/03/15	한국ITW지회	안전1. 사드 반대 투쟁 계획 건 안전2. 신분보장 심의 건 안전3. 지노위 노동자위원 승인 건 안전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건
70차	17/03/20	서연씨애편지회	안전1.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계획 건 안전2. 지부 투쟁본부 전환 건 안전3. 3월~4월 투쟁계획 건
71차	17/03/27	동진지회	안전1. 지부 및 지회 임원 수련회 건 안전2. 3/4분기 투쟁기금 사후승인 건
72차	17/04/03	한국ITW지회	안전1. 지부집단교섭 상견례 및 교섭일정 건 안전2. 당면투쟁 건
73차	17/04/10	한국프랜지 지회	안전1. 당면투쟁 건
74차	17/04/17	덕양산업지회	안전1. 당면투쟁 건 안전2. 신분보장 심의 승인 건
75차	17/04/27	한국프랜지 지회	안전1. 4월~5월 투쟁계획 건
76차	17/05/11	덕양산업지회	안전1. 동진지회 투쟁계획 건 안전2. 전민족대회 울산준비위원 모집 및 발족식 건 안전3. 투쟁사업비 사후 승인 건
77차	17/05/18	세종공업지회	안전1. 신분조장기금 요청 승인 건 안전2. 5월 당면투쟁 건
78차	17/05/25	고강알루미늄 지회	안전1. 동진투쟁 승리 문화 한마당 건 안전2. 동진지회 조합비 납부 유예 요청 승인 건
79차	17/06/01	한국ITW지회	안전1.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건

차수	날짜	장소	주요안건
80차	17/06/08	서연이화지회	안전1. 6월~7월 투쟁계획 건 안전2. 규정, 규약개정 현장 토론 건
81차	17/06/15	서연이화지회	안전1. 당면투쟁 건 안전2. 조정신청 건
82차	17/06/22	세종공업지회	안전1. 2017년 임단투 및 동진오토텍 총력투쟁 계획 건
83차	17/06/29	세종공업지회	안전1. 3/4분기 특별회계 사후 승인 건 안전2. 2017년 임단투 및 동진오토텍 투쟁승리 총력투쟁 계획 건
84차	17/07/06	한국프랜지 지회	안전1. 분사무소 설치관련 토론 건 안전2. 2017년 7월 투쟁 계획 건
85차	17/07/13	서연이화지회	안전1. 목간전용 건 안전2. 2017년 7월 투쟁 계획 건
86차	17/07/20	울산지부	안전1. 한온시스템 지회 보충교섭 의견접근안 승인 건 안전2. 박점환조합원 편제 건
87차	17/07/27	세종공업지회	안전1. 8.15 전국노동자 대회 참가 건 안전2. 개별조합원 가입승인 건 안전3. 동진지회 대의원 징계요청 건
88차	17/08/07	서연이화지회	안전1. 8.15 전국노동자 대회 참가 건 안전2. 8월 투쟁계획 건
89차	17/08/14	한국ITW지회	안전1. 목간 전용 건
90차	17/08/21	덕양산업지회	안전1. 현대중공업 재벌 규탄대회 건
91차	17/08/28	울산지부	안전1. 가예산 승인 건 안전2. 개별조합원 승인 건 안전3. 지부 임원선거 일정 확정 건

2-2. 2017년 교섭보고

1) 중앙교섭 보고

2017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최종합의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7,6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터 괴롭힘 금지]

- ①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7년 7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상 구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상임이사 박 근 형

금속산별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산별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산별협약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6조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정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최종합의 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7 조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 ①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 ②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제 8 조 【대의원 활동시간】

조합 대의원(중앙.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 9 조 【중앙위원 활동시간】

조합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1. 조합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 조합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제 10 조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 중앙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제 13 조【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4 조【전임자의 처우】

-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제 15 조【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16 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3 장 노동조건, 임금, 퇴직금

제 17 조【노동시간】

-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

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9 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7,6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④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 20 조 【임금 ■ 노동시간체계 개선】

-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④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단축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⑤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말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21 조 【통상임금】

-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제 22 조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4 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제 4장 건강권, 노동안전보건

제 25 조 【일터 괴롭힘 금지】

- ① 회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훼손·침해하는 일터괴롭힘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노동자가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주장하면,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 27 조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제 28 조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제 29 조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 (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0 조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조합(지회,분회)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동수가 참여하며, 조합측 인원에 대한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 위험성 평가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 31 조 【해외공장】

-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32 조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제 33 조 【별도법인】

-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4 조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35 조 【적정인원, 배치전환】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제 36 조 【산업공동화 대책】

- 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

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제 37 조【고용안정 등】

- 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원변동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

제 38 조【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합의로 한다.

제 39 조【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 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6 장 비정규직 관련

제 40 조【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42 조【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 43 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

⑤ 회사는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제 44 조【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제 45 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제 46 조【명예감독관 위촉】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제 7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 47 조【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제 48 조【우리 쌀 사용】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제 49 조【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0 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 8 장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제 51 조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 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운영한다.

1.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공동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임금체계 개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2 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 박근형

2) 지부교섭 보고

가. 2017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월 154,883원을 요구한다.(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원단위절사)

나. 지부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은 2017년 기본급 최저인상액을 32,000원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지회 보충교섭에서 결정한다.
단, 고강알루미늄은 2017년에 한하여 지부 대각선 교섭에서 논의한다.

다. 2017년 지부 집단교섭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찬성율
2,194	1,697	1,450	243	85.44

라. 2016년 울산지부 집단교섭 합의안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2017년 집단교섭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 8개 사업장[(주)서연이화, 세종공업(주), 덕양산업(주), 한국프랜지공업(주), 한국ITW(주), (주)고강알루미늄, (주)마이테크, (주)에쓰제이엘]은 2017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집단교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아 래 -

[임금 인상안]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은 2017년 기본급 최저 인상액을 32,000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지회 보충교섭에서 결정한다.

단, 고강알루미늄은 2017년에 한하여 지부 대각선 교섭에서 논의한다.

2017. 10 . 26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호 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 교섭대표



보고

노조 10기 1년차 사업계획

1. 정세

가. 세계정세

1) 경제

- 세계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이래 ‘글로벌 슬럼프’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가 남미-아시아-미국-유럽-중국 등으로 순환하면서 연속되고 있으며, 지역 내의 국가간·계급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그 양상은 신자유주의 위기를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탈출하려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다른 지역에 전가하거나, 같은 지역 안에서는 국가 간, 국가 안에서는 계급·계층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모순들이 2016년 브렉시트와 2017년 트럼프노믹스로 나타나고 있다. 모순의 표출은 영·미 두 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의 선진 제국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 2016년의 브렉시트에 이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등장은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와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과 45%의 보복관세, 소득세·법인세의 대폭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방비 대폭 확대, 에너지산업과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 불법이민 규제와 기후변화 부정 등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다시 손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각국과의 개별적인 무역협정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세계 자유무역 경제패권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다.

- 트럼프가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올리자 각국은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TPP 회원국들은 중국에 손을 벌리려 하고, 유럽연합은 남미를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리더 부재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 성립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양대 기둥 중심으로 70년 넘게 이어져온 글로벌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 트럼프노믹스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정부에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보복관세 등으로 압박해올 것이다.

- 미·중간 무역전쟁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고 중국경기 침체에 따른 대중국 소비재 수출도 위축될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주의로 세계 교역량이 줄게 되어 한국의 수출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금융 부문의 충격은 더욱 급격하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2017년에는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

며 3번의 금리인상이 추진될 수 있다. 미 연준이 0.25%p씩 두 번만 올려도 한국의 현재 금리인 1.25%와 같아진다.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심각한 금융 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 금리를 따라 한국 금리를 올리면 이미 1400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다.
- 이런 가운데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를 느낀 중국은 이미 2012년 바오바(保八 ; 8%성장 고수)를 포기하고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했다. 동아시아 수출을 이끌던 일본도 20년 불황을 견디다 못해 2013년 아베노믹스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개혁에 나섰다.
- 그러나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지만, 여전히 박정희식의 산업화시대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다. 국내총생산 중 민간 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평균소비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르는 장기불황 당시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정치

- 세계적인 추세가 더 불확실하고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그리스·스페인·아일랜드 등에서 민중투쟁이 격화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되고 낡아버린 신자유주의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끝 없이 심각해졌는데도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태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 신자유주의 말기 증상인 것이 분명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안세력이 조직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불만이 우익적 선동을 따라가고 있는 양상이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 즉, 트럼프 집권 4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악화'라고 하기보다 '불확실성'의 시대라 볼 수 있다. 미국 정치가 양당 지배구조로 흘러온 역사가 오래되고 고착되어 있어서 트럼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의 공약들에 모순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낮고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앵그리 화이트를 달래는 일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 어쨌든 세계의 경찰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만 하겠다는 트럼프의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다. 이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한테 중국 압박에 앞장서라고 요구할 것이며, 한·미·일을 묶는 안보협력과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 물론 그동안 트럼프는 북핵 문제가 중국에 달려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비중이 더욱 커졌다.
-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20년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악재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및 김정은과의 담판, 그리고 ICBM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과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산업을 버릴 수 없고 무기산업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야 하는 매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선제타격론과 함께, 김정은 암살 혹은 북한에 폭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북·미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현상 유지를 선호해온 반면 트럼프는 그것을 미국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 중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피력한 인물이 트럼프다.
- 유럽에서는 신냉전이 일어날 수 있어도 아시아에서 쉽지 않은 하나의 이유는 미·중간의 군사력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중국의 2016년 국방비 예산은 1500억 달러인 반면, 미국의 예산은 국방비를 감축하는 중인데도 4500억 달러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수준에서 중국 국방력은 미국의 1/10에 불과하며 여기에 첨단 군사시설과 해군력까지 고려하면, 몇 년 안에는 군사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 동북아 정세에서 위험한 것은 미·중간의 관계보다 오히려 일본의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움직임이 국지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아베총리가 승리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에 박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두 가지가 남은 상황이다. 하나는 ‘북한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 북한 으로서는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 하는가 하는 문제다.
- 다른 하나는, 북미간 전쟁은 어쨌든 한국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 한반도의 전시작전권(軍통제권)이 연합사 사령관에게 있지만, 전작권이라는 것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여전히 고착상태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다. 남북관계는 완전단절 상태라 아무 수단도 갖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때 한국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에 트럼프라는 예측불가능한 인물이 등장해 있다.
- 선제타격론과 북한붕괴론은 상대를 향해 폭주하면서 충돌할 수 있는 치킨게임이다. 지금은 노동운동과 함께 평화운동이 절실한 때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추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되어 있다. 앞으로 1년은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나. 국내정세

1) 경제

- 가진 자의 지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이 넘는데 국가채무는 600조원 이상이고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서로 관계없다는 듯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있다.
- 최근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러 2년째 연간성장률이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메르스 같은 대형 악재도 없었고 또 재정을 풀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 수치보다 내용이 더 문제다. 2016년 성장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부양책에 의한 건설투자였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부문별 분기 성장률

	2016년 3분기	4분기
민간소비	0.5	0.2
정부소비	1.4	0.5
건설투자	3.5	-1.7
설비투자	0.2	6.3
수출	0.6	-0.1
수입	2.8	0.2
국내총생산	0.6	0.4

단위:%, 전기 대비, 자료: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2.4%라고 발표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7%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최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3분기에 1.4% 성장해서 3%대 성장률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할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위기론과 장기침체론이 논란되고 있다. 장기침체론의 경우 2% 이하의 저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위기론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앞으로 오랜 기간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다.
-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4개 업종의 경우 부실화할 위험성이 높아 구조조정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이 2014년 사상최초로 감소한 데 이어 영업이익률 역시 2013~2015년에 4.3%로 하락했다. 제조업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11월 현재 70.3%는 IMF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 이에 따라 심각한 고용감소가 예상될 뿐 아니라 그 결과 내수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저출산·고령화, 고용불안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 때보다 국내소비가 부진한 상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한국가구 평균소비성향이 71.1%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낮았던 1998년의 71.2%보다 낮은 수준이다.
- 한편 각종 소비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염병과 흉작으로 식품가격 또한 치솟고 있다. 여기에 OPEC의 석유감산으로 유류가격이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부채다. 박근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6.4%로, 소득증가율 2.4%의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증가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빚더미에 깔린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경기회복이 다시 지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외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의 긴장 고조 등 경제 외적인 환경도 한국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어업 협정이 계속 걸도는 등 한·일간의 경제교류가 어려움에 막혀 있고,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미 여행과 한류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제조업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2) 촛불 이후

-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력해진 것은,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도 끈질기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소위 ‘박정희 신드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촛불투쟁 내내 70~80%의 탄핵 여론이 비슷하게 유지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탄핵 국면에서 ‘거대한 동맹’을 이루고 있었다.
- 진보·보수 간의 동맹은 우리 사회체제의 변화와 박정희 패러다임이 맞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이미 신자유주의에 깊숙이 빠져든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관치경제와 개발독재 식의 정치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보수언론이 박근혜 정부에게서 등을 돌린 것도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을 읽은 것이다.
-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로 제도권 정당들의 정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박정희 패러다임 하에서 정치가 이루어졌다. 촛불투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도권 정치의 바탕을 이루던 박정희 패러다임 자체가 깨지고 있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을 청산하고 어디로 나아갈지가 지금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오래된 수세기 정세가 어느덧

고양기 정세로 바뀌었지만,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세를 이끌어 나갈 주체 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사회단체는 물론 노동조합도, 대중운동을 주도하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진보정당도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는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고, 분열된 채 상호불신의 늪에서 각자도생 하고 있다.
- 경제적 지형을 보면, 1987년 6월 항쟁 때는 1985년부터 시작된 3저 호황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을 해주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시대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철저적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촛불투쟁의 가장 큰 요구였던 재벌개혁 문제가 뒷걸음치고 단지 공정거래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는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 야당들의 이합집산과 뚜렷한 정치활동의 부재로 인해, 정국의 주도권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 하지만 제도정당들의 지형을 볼 때 제1당인 민주당이 121석에 불과해 야당들 합인 178석에 비해 여소야대가 된다. 정의당 6석을 포함해도 차이가 없으며, 국민의당과 협조가 되더라도 40석에 불과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안 통과선인 180석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이런 상태로 2020년 총선까지 가게 된다. 결국 협치라는 이름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갈 것이다.
- 하지만 지난 촛불투쟁의 규모와 역동성은 엄동설한에도 몇 달째 제도정치권을 넘어섰다. 새 사회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자신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촛불광장에서 표출됐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의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바탕에 깔려 있다. 이른바 고양기 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 이런 대중들의 열망과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 억눌려왔던 인권보장 문제,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농수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청년실업 해소와 반듯한 일자리 창출 등,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제반 요구들이 있다.
- 반면에 보수진영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중운동을 제도권으

로 수렴하기 위해 또 대중과 조직운동을 분리하기 위해 요구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물론 개헌 문제는 노동진영에게도 중요한 과제다.

- 새로 열리는 지형이지만, 보수언론과 제도권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라는 큰 흐름에 서는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조직노동에게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통합을 내세워 포섭전략을 쓰는 한편, 저성장 등 뉴노멀 시대에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불가피론과 노동자 양보론의 이데올로기 공세 그리고 노동회의소 등 제도적 공격을 해올 것이 예상된다.
- 이미 업종별로 임금체계 공략이 시작되고 있다. 사업장 차원에서 신임금체제로 공격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을 앞세워 임금체계와 일자리나누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
- 미래노동·산업정책 등 제조산업 발전전망 및 산별임금체계·실노동시간단축·노동존중숙련체제 등 민주노조 자신의 영역에서 선제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과거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 때처럼 또 다시 밀리기만 하는 사태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3) 금속노조의 현재

- 87년 이후 성장해온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성과다. 무늬만 산별이라 평가되지만, 무늬라도 산별인 것은 사실이다. 그 중, 조직의 덩치가 커지고 재정이 모아진 것은 진전이다.
- 그러나 조직률에서 계급대표성은커녕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계급 내 분열 가능성은 심각하게 커져 있다. 87년 이후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노동자 삶의 터전은 많이 개선됐지만 노동자 내부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87년 이후 제조업의 축소와 97년 이후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오지 못한 탓이다.
- 이렇게 산업정책에 개입을 못하는 사이에,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은 성큼 다가와 있다. 하지만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이미 고령화되고 있는데, 젊은 간부·활동가 양성에 조직 힘이 전면적으로 실리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상황만 보면 중앙교섭도, 지역공동위원회도, 1사1조직도 고착되어버린 상태로 전반적으로 기업별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하고 있지만 미미한 성과뿐이며, 단일한 조직의 규율은 지켜지지 않은 채 오히려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조직률이 낮고 힘이 없으니 단협 적용률도 최악의 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다. 결국,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노동자계급 내 분열의 조건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산별노조보다 자기 사업장을 우선하는 시각, 비정규직과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등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의식 없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급의식이 불분명하고 결정과 실천이 따로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기업별 의식과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지만 중소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 금속노조가 기업별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로 전환한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경로에서도 기인한다. 노동자 각자의 의지로 산별노조 조합원이 되기보다 소수가 끌여가고 다수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산별노조를 조직한 데서 시작되고 있다.
-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함께 결정해놓고, 실천은 단위별로 각자 사정에 맞춰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게 조직 전체의 규율이 떨어지니까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지는 자세가 점점 더 약해진다.
- 노동자 문화가 달라진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노동자대투쟁 때는 노조 중심으로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었다면, 사회변화와 함께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문화의 빈곤과 함께,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정서를 기업 안에 포섭하려는 신경영전략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기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타임오프 문제로 노동조합들의 힘을 심각하게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복수노조 문제는 지부의 중심 사업장 파괴로 이어졌고, 그것은 곧 다른 지부와 소속 사업장들에게 큰 피해의식으로 이전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2017년 11월 현재 평상시의 교섭기간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까지도 미타결 상태를 풀지 않고 있는 사측 때문에, 노동조합 일상활동이 가로막혀 있다. 천민자본의 노동배제적 탄압으로, 조합원들은 구조조정 문제가 터졌을 경우나 임단협 때는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지만, 그 외의 조합활동에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 이와 같이 기업별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산별노조에 대한 패배주의를 딛

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상과 발전전망을 올바르게 세우고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 종합

- 종합하면, 양극화된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한편에서는 난민의 문제로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브렉시트와 트럼프노믹스 같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미·중간의 점증하는 갈등 속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 국내적으로는 대중투쟁이 고양기를 맞이하는 반면, 새로 들어설 정부는 정치·경제적 어려운 조건을 들어 체제내화를 위한 포섭과 이데올로기적 강제를 병행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노동 등 운동주체들의 준비 정도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재의 정세다.
- 이러한 정세에서 조직노동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중투쟁과의 결합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한편, 대중의 동력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상승시켜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그치고 만다면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 고양기 정세를 맞이하는 조직노동은 일상 시기와는 다른, 담대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투쟁 이후 새롭게 만들어나갈 2018년 체제는 1987년 체제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 1987년 체제의 바탕에 경제적 호황과 민주화 열망이 있었다면 2017년의 정치·경제적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저성장 시대와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라는 특징이 자리하고 있다. 또 개인들의 자발성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한 다양한 소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라는 기술적·경제사회적 시스템 전환과도 맞물려 있으며 조만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완료되는 등 인구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 특히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제조업의 부실화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고용감소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경기가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술발전에 의한 새로운 구조조정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생산을 대표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제조업 발전전망의 쟁취가 무엇보다

다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위해 과거 재벌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출발일 뿐이다. 경제민주화 초점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이 무엇보다 관건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노사관계는 단지 노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인 갑을관계를 극복하는 기초다.
- 경제민주화의 관건인 ‘민주적 노사관계’는 지금과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를 타파하고 산별적 노사관계와 산별적 노동체제를 확립할 때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 위에서 산별임금체계, 실노동시간단축, 노동존중 숙련체제 및 기본소득, 공유경제 등 새 시대에 걸맞는 제도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사회체제를 향한 변혁은 대안사회의 상을 모아내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산별체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요약]

- 중기적 정세는, 신자유주의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며, 2016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의 현실화 및 2015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2023년 완료되는 등 향후 5~6년 후에는 매우 다른 환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단기적 정세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지지는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 야당들의 이합집산과 뚜렷한 정치활동의 부재로 인해, 정국 주도권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운영5개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촛불투쟁의 중심 요구였던 재벌개혁조치 이미 뒷걸음치고 공정거래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소야대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수여야의 협치를 하게 될 것이며, 정치일정으로는 2018년 6월 개헌국면과 지자체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정권이 집권 1~2년 지나면서 힘이 빠지듯이, 2018년 중반을 넘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보수여야 간의 질서재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촛불투쟁에서 확인했듯이 거시적인 정세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고양기다. 여기서 과거적폐 청산에 그치느냐 아니면, 적폐청산을 딛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데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지

금의 초점이다. 지난 촛불투쟁의 요구가 정세 바탕에 깔려있고 그것이 대중운동으로 나아가느냐 가로막히느냐 하는 점에 집권세력과 운동진영의 전선이 쳐져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협의채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노동운동에 대하여 집단이기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노동회의소 등 제도적으로도 공격해올 것이 예상된다. 각 업종별 임금체계 공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사업장 차원에서는 신임금체제로 공격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을 앞세워 임금체계 및 일자리나누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 미래노동·산업정책 등 제조산업 발전전망 및 산별임금체계·실노동시간단축·노동존중숙련체제 등 민주노조 자신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과거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 때처럼 또 다시 밀리기만 하는 사태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 1987년 체제가 서서히 마감하고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체제로 들어서는 등 매우 다른 환경으로 접어들 것이 예상됨에도, 향후 5년의 정세는 공세기인데 노동운동 주체는 산별운동의 정체와 퇴보로 여전히 수세로 몰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기회와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 2018년 개헌국면과 지자체선거를 향해 각 세력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촛불로 표출된 대중의 동력을 다시 살려내어 고양된 정세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선거와 개헌을 거치면서 보수여야의 새로운 질서재편으로 마감할 것이냐, 20~30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거대한 지각변동 위에 2018~2019년은 매우 격동적인 정세를 앞두고 있다.
- 특히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내수경기가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위 기술혁신4.0에 의한 새로운 구조조정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생산을 대표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제조업 발전전망의 쟁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의 관건인 ‘민주적 노사관계’는 지금과 같은 기업별 노조 체제를 타파하고 산별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때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 위에서 산별임금체계, 실노동시간단축, 노동존중숙련체제 및 기본소득·공유경제 등 새 시대에 걸맞는 제도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체제를 향한 변혁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산별체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사업

가. 사업기조

- 양질의 일자리 쟁취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목표로,
2018년 17만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대정부투쟁과 산별교섭을 통일적인 방침으로,
2018년 17만 총력투쟁을 추진한다.
- 2018년 대정부투쟁과 산별교섭을 바탕으로,
2019년 대공장 돌파 및 산별교섭의 도약을 쟁취한다.

2018년 17만 총력투쟁	
중심 의제	양질의 일자리 쟁취
	산별교섭 제도화
집중 투쟁	대정부 교섭·투쟁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나. 사업목표

- 1)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법 전면 제·개정
- 2) 제조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쟁취
- 3) 구조조정·노동탄압 등의 조직적인 대응
- 4) 산별노조 중장기 전략과 발전토대 구축
- 5) 토론문화 활성화와 산별운동의 기풍 확립

1)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법 전면 제·개정

- 목표
 - * 비정규직·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 * 사용자의 산별노조 인정 및 사회적 차원의 산별교섭체제 확립
 - * 상반기 개헌국면을 활용하여 노동헌법 제정 필요성의 사회여론 확대
- 주요 의제
 - * 초기업단위 사용자단체 구성의무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산별교섭 제도화
 - * 손배가압류·타임오프·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 노조 할 권리
- 투쟁 방침
 - * 상반기 개헌국면에 총연맹을 중심으로 노동법 제·개정 투쟁에 총력 집중
 - * 노동법 제·개정 투쟁과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서 의제·투쟁을 통일
 - * 상반기 대정부투쟁과 산별교섭을 하반기 대국회투쟁으로 확대

2) 제조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쟁취

- 목표
 - * 노동을 배제한 일방적 기술혁신4.0 대응
 - * 제조업 산업정책 개입 확대
- 주요 의제
 - * 비정규직 철폐 등 전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 * 신임금체계 폐기 및 산별임금체계의 확립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 * 노동 존중, 숙련 중심의 작업장 쟁취
- 투쟁 방침
 - * 대정부투쟁과 산별교섭 의제의 통일
 - * 자동차·조선·철강 등 원·하청 공동대응 강화
 - * 비정규직 사회연대기금 추진방안 현장토론으로 모색

3) 구조조정·노동탄압 등의 조직적 대응

- 2017년 미타결 사업장의 조직적 대응력 강화
-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임금체계 압박에 대한 조직적 대응
- 구조조정, 외자기업, 노조파괴 사업장에 투쟁력 집중
- 산재은폐·과로사망 등 반노동정책 폐기투쟁 전개

4) 산별노조 중장기 전략과 발전토대 구축

-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정비와 산별협약 발전로드맵 수립
- 현장조직력과 지역사업 강화 및 지부체계 발전방안 수립
- 사내하청·거점조직화 등 비정규직·미조직 종합발전전략 수립
- 확대·강화된 산별노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규약·규정 재정비

5) 토론문화 활성화와 산별운동의 기풍 확립

- 수평적 소통과 토론문화 활성화, 조합·지부·지회 공유체계 확립
- 학습팀·정책토론회의 조직적인 운영 및 산별운동 사업기풍 확립
- 향후 산별노조를 이끌어갈 청년·비정규직 활동가 양성체제 마련

[요점 해설]

양질의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4.0에 대응해 제조업 발전방안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제조업을 새롭게 살려내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쟁취’는 정규직 일자리를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발전4.0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산업변화가 커다란 지각변동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과제입니다.

* 양질의 일자리, 즉 ‘좋은 일자리’는 지금의 노동 현장처럼 끊임없이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이 무시되고 단순노무에 시달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불안에서 벗어나면서 작업자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노동 자체가 존중되는 현장, 그래서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말합니다.

* 좋은 일자리는 ‘산업정책 개입’과 함께 ‘신임금체계 폐기와 산별임금체계 확립’·‘노동조건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 단축’·‘노동이 존중되는 숙련 중심의 작업장’을 쟁취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노사 간에 ‘산별교섭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양질의 일자리’와 ‘산별교섭 제도화’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하나입니다.

☞ ‘지부·사업장에서 실천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내 분과위원회와 각종 부서회의를 통해 12월~1월 전 조직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2018년 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 사업계획

- 1) 대정부투쟁 및 산별교섭
- 2) 조직의 확대
- 3) 산별조직 강화
- 4)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5) 정치·통일 사업

1) 대정부투쟁 및 산별교섭

가) 기초

- 일방적 기술혁신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쟁취 및 노조할 권리와 산별교섭체제 확립을 목표로, 대정부투쟁과 산별교섭을 통일된 17만 총력투쟁으로 전개한다.
- 비정규직 등 전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신임금체계 폐기 및 산별임금체계 확립, 노동조건 저하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존중 숙련체제를 주요 의제로 추진한다.
- 의제에 대한 현장 차원의 계획, 투쟁과정의 지부교섭 활용방안 등 지부·지회 의견을 모아 내고 주체적인 참여를 조직한다.

나) 목표

- 양질의 일자리 쟁취 및 제조업 산업정책 개입 확대
- 노조 할 권리 쟁취 및 산별교섭 보장 노동법 개정
- 의제와 투쟁에 대한 현장의 주체적인 참여 조직화

다) 세부계획

(1) 대정부 투쟁

- 대정부 투쟁은 교섭 틀을 넘어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의제의 통일과 시기별 연계를 통해서 산별 교섭·투쟁과 통일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적 의제는 비정규직 등 전사회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자동차·조선·철강 등 산업 정책 개입을 중심으로 하며, 세부 영역으로 산별임금체계·실노동시간단축·노동존중숙련체제와 타임오프·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 노조 할 권리와 초기업단위사

용자단체 구성의무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산별교섭 제도화를 포함한다.

- 현장조직화 교육·선전, 기자간담회와 기자회견, 국회 차원의 기획토론회·입법공청회, 전국 집중투쟁 및 지역별 시민캠페인, 제조연대 공동투쟁, 국제연대 심포지엄, 금속노사 공동 선언, 노정교섭을 망라하여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 시기별 주요사업
 - * 12~1월 : 중심 의제를 요구안으로 구체화, 교육영상·포스터 제작·배포 등 현장조직화를 위한 교육·선전
 - * 1~3월 : 2월 국회를 겨냥, 기자간담회·기자회견, 국회 토론회·공청회, 대정부 요구전달 및 투쟁선포식, 국제연대 심포지엄, 금속노사 공동선언, 노정교섭
 - * 3~6월 : 개헌국면과 지자체선거를 겨냥하여, 전국 집중투쟁 및 지역별 시민캠페인, 제조연대 공동투쟁
 - * 6~9월 : 임단투 교섭집중 및 파업투쟁으로 상승
 - * 9월 이후 :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하여, 전국 집중투쟁 및 지역별 시민캠페인, 제조연대 공동투쟁

(2) 산별 교섭·투쟁

- 산별 교섭·투쟁은 사회적 의제 중심으로 추진하며, 대정부 교섭·투쟁과 통일된 방침 하에 진행한다.
- 교섭방침은 중앙·지부교섭과 그룹사교섭 등 이중으로 진행된 체계를, 조합 본래의 교섭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중심의 단일한 방침으로 추진한다.
-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미참가·이탈 사업장의 사용자간담회·지부별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집중타격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완성차 중심의 계열사·원하청 관계가 힘을 발휘하는 현실을 감안, 자동차·조선·철강 등 분과 차원의 정책대응 및 그룹사 단위의 공동활동을 긴밀하게 결합한다.
- 대정부투쟁에서 산별교섭체제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듯이,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서는 대기업의 사용자협의회 참여 및 노사공동위원회 가동을 2018년 실질적인 목표의 하나로 추진한다.
- 요구안은 단협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며 특히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룰 지역별 의제개발에 힘을 쏟는다. 요구안은 대정부투쟁과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유기적으로 배치하며, 지역별 캠페인을 할 때 전국의 중심의제와 함께 지역별 의제를 배치한다.
- 의제 수립의 원칙은 조합원의 생활감각으로 와 닿는 것을 기본으로, 첫째 하나의 요구 쟁취보다 전체 산별교섭 진전을 기준으로, 둘째 기업 안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의제에 초점을, 셋째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단계별 적용을 감안한다.
- 시기별 주요사업
 - * 3~4월 : 투쟁준비 완료,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돌입
 - * 3~6월 : 개헌국면·지자체선거를 활용, 사회적 의제 캠페인 병행
 - * 6월 이후 : 2018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시기집중 파업투쟁의 전개
 - * 9월 이후 :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마무리와 노사공동위원회 가동, 2019년 전략적 의제와 교섭·투쟁 체계에 대한 현장토의

	대정부투쟁	산별교섭
12~1월	*중심의제를 요구안으로 수립 *교육영상·포스터제작·배포와 현장조직화를 위한 교육·선전	*사회적 의제 등 요구안 마련
1~3월	*2월 국회 겨냥, 기자간담회·기자회견, 국회토론회와 공청회, 대정부 요구전달, 투쟁선포 노정교섭	*임대에서 교섭방침·투쟁방침·타결방침 수립 *금속노사 공동선언, 국제연대 심포지엄
3~6월	*개헌국면·지자체선거 겨냥, 전국 집중 투쟁과 지역별시민캠페인, 제조연대 공동투쟁	*임단투 준비 완료 *중앙·지부·사업장 교섭 돌입 *교섭의제와 시민캠페인 결합
6~9월	*노정간 교섭·정책협의 계속 진행	*2018년 주요의제 중심으로 교섭집중 및 시기집중 파업투쟁의 전개
9월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 겨냥, 전국 집중투쟁 및 지역별 시민캠페인, 제조연대 공동 투쟁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마무리와 노사공 동위원회 가동 *2019년 중심 의제 및 교섭·투쟁 방침에 대한 현장토의

2) 조직의 확대

가) 기초

- 금속노조의 제반 활동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혁신한다.
- 중앙의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기획·관장력을 높이며, 미·비 조직화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지역지부 확대에 분명히 둔다.
-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를 위해 노조 할 권리 등 노동법 전면 제·개정 투쟁,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한다.

나) 목표

- 조선·철강·자동차 등 사내하청 1사1조직, 거·통·고 등 거점조직화 사업토대 마련
- 비정규직 활동가 양성체제 및 미조직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체계 확립
- 제조연대 사업의 전개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확립

다) 세부계획

(1) 간접고용비정규 사업

-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요구를 정식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5대 공동요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적 투쟁, 캠페인, 제도개선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 사내하청 임금·노동조건 차별해소를 임·단협 지침으로 하여 2018·2019 교섭·투쟁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 특히 조선업종 중심으로 1사1조직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2018년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제도정비·교육선전을 완료, 2019년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간다. 이때 특히 민주노조에 대한 자부심을 확립하는 데 집중한다.
- 비정규직 투쟁의 운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발전전략을 갖춘 비정규직 활동가 양성체제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현장주체의 발굴, 원·하청 공동사업의 강화, 비정규활동가대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미조직 사업

- 미조직사업이 조합·지부·지회의 주요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부·지회별 미조직·비정규 담당자 선임, 교육, 월1회 선전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8개 전략조직화 담당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공단·산업단지 확장지역 등 중앙 관장 거점조직화 방침을 구체화하며, 특히 삼성·포스코 등에 대한 조직화전략을 집중하여 수립한다.
-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준조합원제도·기금운영방안·신규사업장편제 등 조합가입이 쉽게 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의 변화를 모색한다.
- 노조 가입과 위상 제고를 위해 버스·지하철 광고, 카드뉴스, 영상,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차량스티커 등 다양한 선전·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와 권리장전, 노조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금속사업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3) 조직간 연대·통합의 모색

- 제조업 현안 대응을 위해 화섬노조·금속노련 등과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 이 과정에 조직확대를 위해서 일정잡기 식 통합추진을 지양하며, 연대단위의 동기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방안에 대해 실사구시 한다.

3) 산별조직 강화

가) 기초

- 현장조합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순회·지역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중앙은 정책생산 위주, 조직사업은 지부 중심으로 운영한다.
- 복수노조·타임오프, 구조조정·장투 사업장의 대책을 해당 사업장을 넘어 전 조직 차원으로 강화한다.

- 현장조직력 강화와 지역의 사회연대 활동 등 지역공동위원회 사업의 내실을 기하며, 기업 지부·지역지부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 학습팀의 조직적 운영과 정책토론회 정례화 등 조직 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여 조직의 기반을 강화한다.

나) 목표

- 복수노조·타임오프, 구조조정·장투 사업장의 전 조직적 대응체제 구축
- 지역공동위원회 내실화와 기업지부·지역지부 공동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현장순회·지역간담회 강화 및 조합·지부·지회 소통체계 확립
- 향후 산별노조를 이끌어갈 청년·비정규직 활동가 양성체제 마련

다) 세부계획

(1) 노조탄압 대응체제 구축

- 타임오프로 인한 활동력 쇠퇴, 복수노조에 의한 탄압이 해당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억압하는 자본의 기획된 공세라는 점, 구조조정과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가 억압적 산업정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노조 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위해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 투쟁사업장들의 동력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하며, 총연맹 차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동법 제·개정 투쟁과 연동해 전체 투쟁의 중심으로 세우고 완강한 전선을 쳐나간다.

(2) 지역공동위원회 활성화

- 지역공동위 운영이 사업비 배분이나 결산보고에 그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공동위 사업의 실태 조사를 추진하며, 특히 조합대의원 공석이 많아지고 기업지부 조합원의 산별노조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지부·지역지부가 함께하는 사업을 강화한다.
- 또한 모든 지부가 지역사업을 진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사업비 하한선을 정해서 교부하며, 지부임기 내 사용하지 않은 공동사업비는 중앙기금으로 환입, 중앙기금으로 적치된 공동사업비는 재정이 부족한 지역 공동사업에 중집 심의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조직운영의 혁신

- 산별노조의 두 축인 지역의 현장성과 중앙의 전문성을 강화해가기 위해, 중앙은 정책생산 위주, 조직사업은 지부 중심으로 운영한다.
- * 모든 중앙부서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책생산에 두는 조직운영
- * 전 조직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전략위·미비특위·교육위 등에 지부의 담당 필참
- * 제반 일상활동 추진과정에 지부의견의 사전 소통·청책을 기본방침으로 운영
- * 지부·지회 간의 의견수렴·사업공유를 위해 지부운영 혁신방안 수립
- * 영상뉴스·포스터, SNS를 통한 매체 형성 등 대중적 홍보와 소통방식의 변화

(4) 학습·토론 문화 활성화

- 학습·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 기본사업으로 세 가지에 집중한다.
- * 간부기본과정과 지회장교안 등을 활용해 전 조직적으로 학습팀 운영

- * 매 시기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전 조직 차원에서 지역별·업종별 토론회 진행
- * 산별조직전망·산업변화에 대한 참여식 교안과 간부중급과정 개발, 특히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젊은 감각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용
- 중장기적으로 활동가 양성체제를 갖추기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 * 교육휴가 제도화를 위해, 단협지침으로 조합교육시간 등 간부교육시간 확보
- * 현장조직력 실태조사 및 현장의 모범사례 개발
- * 교육원 설립과 연수원 가동준비 완료

4)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가) 기초

- 미래노동·산업정책 등 제조산업 발전전망, 산별임금체계·실노동시간단축·노동존중숙련체제 및 고령화에 따른 정년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적 의제와 산별정책 수립, 사업장단협·지부협약·중앙협약 등 산별교섭·산별협약 발전지도를 수립한다.
- 미조직·비정규 위원회의 역할을 높인다. 미조직위원회의 지역체계 확립과 함께, 간접고용 비정규위원회 사업에서 비정규직 중심의 사업방향을 강화한다.
- 현장조직력 강화, 지역사업 확대를 지역지부로 수렴·체계화하는 등 조직강화 사업을 종합적인 전망 하에 추진한다.

나) 목표

-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의 조직적 전개와 산별 교섭·협약 발전계획 수립
- 비정규직 투쟁·조직화 종합발전전략 수립, 미조직 전략조직화 토대 구축
- 현장활동 발굴, 지역사업 개발로 산별조직 발전지도 수립, 규약·규정 정비

다) 사업계획

(1) 전략위원회의 구성

- 중장기 전략 추진에 필요한 당면 전술방안의 수립을 포함하여, 향후 10년을 전망하면서 당면 5개년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 금속노조를 새로 건설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조합집행부 임기를 넘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한다.
- 전략위는 당면 현안을 포함해 원인분석·발전방안·단계별계획 등을 입안하며, 당면 현안의 집행은 중집·상집의 골간체계를 통해서 추진한다.
- 전략위 사업은 산별정책·조직강화·조직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전략위 체계는 전체회의·기획회의·3분과로 구성한다.
- 전략위 사업추진은

- * 1차 작업결과를 2018년 상반기 안에 토론안으로 제출, 2018년 하반기에 전 조직적인 토론을 거쳐 2018년 안에 1단계 작업을 완료한다.
- * 이어서 2019년부터 2단계 작업에 돌입하며 상반기에 2차 토론안을 제출, 하반기에 전 조직적 토론을 거쳐 2단계 작업을 완료한다.
- * 2019년 말에는 이후 3개년 사업계획을 추가로 제출한다.

기 간		사업 목표
2017년 12월		전략위원회 구성
2018년	상반기	발전전략 1차 토론안 제출
	하반기	발전전략 1차 토론안으로 전 조직적인 현장토론 진행
2019년	상반기	발전전략 2차 토론안 제출
	하반기	발전전략 2차 토론안으로 전 조직적인 현장토론 진행 이후 3개년 사업계획안 제출

(2) 산별 교섭·협약 발전계획

- 미래노동·산업정책 등 제조산업 발전전망과 산별임금체계·실노동시간단축·노동존중숙련체제,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적 의제 수립에 집중한다. 또한 업종별 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등 산별노조가 갖추어야 할 산별정책 생산에 힘을 쏟는다.
- 산별교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산별협약의 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장단협·지부협약·중앙협약 등을 종합하고 횡적으로 업종별 종적으로 교섭층위별로 재분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종을 포함하는 중앙협약과 사업장단협을 포함하는 지부협약 등으로 산별협약안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
-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등 교섭층위간의 관계와 교섭시기·교섭주기 등을 정비하여 산별교섭체계의 단계적 발전지도를 수립한다.

(3) 미·비사업 발전전략 수립

- 1단계로 2018년에, 금속노조에 걸맞는 사내하청 조직화방침을 정립하고 비정규직 투쟁·조직화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한다.
 - * 산하 원·하청과 비정규직 실태 전면조사
 - * 비정규직 사회연대기금 추진방안 현장토론
 - * 업종 특성에 따른 사내하청 조직화방침 세분화
 - * 직영체제·딜러영업 간의 과당경쟁·급여체계 구체화
 - * 사무직노동자 확대방안 및 생산·사무직 결합방안 모색
 - * 차별철폐·정규직화 투쟁, 원청사용자성 투쟁, 법원판결 등 종합평가
- 2단계로 2019년에, 미조직 전략조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만 조합원 시대로 나아갈 기

초를 세운다.

- *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조직화에 나서는 일상활동 체계 구축
- * 조합가입을 쉽게 할 수 있게 불이익 사전대처 등 제반 장치·절차의 정비
- * 중앙관장 아래 지부 미조직담당 규모를 일상체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 * 미·비사업 예산을 20% 이상 전략 차원으로 올리는 연도별 계획·방안 등

(4) 산별조직 발전지도 수립

-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 세 가지를 추진한다.
- * 첫째 현장소모임 모범 사례 발굴과 조직적 운영체계 확립
- * 둘째 지역사회 의제와 지역별 집중사업 개발, 지역공동위 발전방안 개선
- * 셋째 사업장간 연대를 넘어설 지부·지회 조직발전방안의 수립
- 현장소모임 모범사례 체계화와 지역별 의제·사업 개발을 2018년 완료하고, 현장소모임 활동매뉴얼 수립과 조직화 및 지역별 집중사업의 조직적 추진을 2019년 시작한다.
- 이어 지회 현장활동과 지역별 집중사업을 결합시킬 지부·지회 조직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2019년부터 전략모델 개발에 착수, 2020년부터 사업장간 연대를 넘어서는 지역지부 실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규약·규정의 개정

- 산별교섭·조직확대 전략에 따라 조직발전로드맵이 수립되는 것과 함께, 향후 30만 산별노조 시대를 향해 나아갈 개정안을 마련한다.
-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수렴하고 전 조직적 현장토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해나간다.
- * 복수노조·타임오프, 구조조정·장투 사업장 지원제도, 조직확장 과정에 기존 단위와 신규조직 간 충돌 문제, 조직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조치 등
- * 조합의 명칭과 목적, 각종 위원회의 정비, 조합·지부·지회 선거제도 정비, 회계규정·처무규정의 세부화 등

5) 정치·통일 사업

가) 방향

- 진보정당 간의 분열이 극복되지 못하고 거꾸로 노동현장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지금,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 관계를 근본부터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차이가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보세력 간의 연대와 공동활동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과의 관계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책협약을 맺는 방침으로, 조합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추진해나간다.
- 정치세력화 방향은 제도정치 활동보다 대중운동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조합원이 일터와 삶터의 지역사회에서 일상활동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때 노동자가 바라는 대안사회가 어떤 세상인지, 동북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기후변화·

난민문제 등 지구적 문제에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노동자 정치·통일 운동의 활동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둔다.

나) 목표

- 정치위원회·통일위원회의 체계 안정화
- 지자체선거와 개헌국면에 노동의제 쟁점화
- 통일일꾼 육성과 통일사업에 조합원 참여 확대

다) 사업계획

(1) 정치세력화 방침

- 2018년 6월 지자체선거에 노동의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며, 2018년 지자체 선거 출마 조합원의 지원체계를 갖춘다.
- 민주노총·진보정당과의 개헌 관련 토론을 조합 내외에서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인다.
- 진보정당 및 국회의원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국회대응 활동을 체계화한다.
- 조합·지부 정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순회간담회와 연 1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2) 반전평화 운동의 전개

- 반전평화 운동의 전개
 - * 전쟁위기 야기하는 전쟁훈련 반대투쟁
 - *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운동
 - *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등 북한 직총과의 자주교류 사업
- 6.15~8.15 통일투쟁 기간에 통일선봉대 조직화 및 8.15대회를 규모 있게 추진한다.
- 일본강제징용, 제주 4.3항쟁, 백두산 통일기행 등 조합원과 함께하는 통일기행사업으로 역사 바로알기 사업을 전개한다.
- 통일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부통일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조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9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상 정 안 건

안건 1호. 9기 2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안건 2호. 10기 1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

안건 3호. 10기 1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안건 4호. 금속노조 10기 1년차 중앙위원 선출 건

안건 5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안건 6호. 10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안건 7호. 기타안건

안건 8호. 결의문 채택의 건

의결주문

- ① 제출된 ‘9기2년차 사업평가(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된 ‘9기2년차 결산감사’ 보고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부 9기 2년차 사업평가 안]

1. 사업기조

- 1) 혁신과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 2) 전체 진보진영을 포괄한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으로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 3)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 4) 노동법 개악 저지-개정투쟁
- 5)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자주통일사업.
- 6) 박근혜 퇴진(하야)투쟁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대 사업 강화.

2. 사업방향과 목표

- 1) 일상적 집행체계 구축
- 2) 제2의 노동 중심의 정치 세력화
- 3)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사업
- 4) 노동자 자주교류를 통한 자주통일사업
- 5) 노동법 개악 저지-개정 투쟁
- 6) 지역 연대사업 확대 강화

3. 세부 사업계획 평가

(1) 일상적 집행체계 구축

- 각 지회 부서, 위원회 임원 및 담당자 선임으로 원활한 지부 집행체계 구축하고 지부와 지회, 지회간 일상적 소통을 중심으로 지부 단결력, 일치성 확보,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제 2의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

- 노동중심의 정치적 노동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중심의 진보진영 총단결을 위한 정치운동을 해나가기 위한 현장정치활동을 진행하였다.
- 무엇보다 노동자가 정세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3)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는 민주노조 운동의 신 성장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조직화를 하는데 집중하였고 신규지회를 건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규지회 투쟁을 지원하며 민주노조가 정착화 되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조선하청노동자 조직을 위한 사업체계(조직화 사업팀 등) 구성등 논의에 있었으나 노조와 소통이 엇갈리면서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했다.

(4) 노동자 자주교류를 통한 자주통일사업

- 현장의 실정에 맞는 현장 자주통일 사업체계 구축하고 현장자주통일 교육 사업을 전개하며 종북공세를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 역사를 바로 잡고 친일적폐세력이 분단세력으로 이어지며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유린한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일제강제징용노동상’ 건립운동과 함께 역사바로알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 더구나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 강행 저지투쟁에 적극 나서며 한반도 전쟁은 용납할 수 없음을 선포하였다.

(5) 노동법 개악저지-개정 투쟁

- 노동법 개악에 맞설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 총력투쟁 체계를 정비하였다.
- 노동법 개악저지-개정투쟁은 민중총궐기를 만들어내고 촛불로 이어지는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6) 지역 연대사업 확대 강화

- 박근혜 퇴진 투쟁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대체 확대 및 공동사업 강화하였다.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투쟁과 사업에서 복무하고 진보세력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대활동 강화하였다.

(7) 지부 집단교섭 투쟁 전략

- 지부집단교섭과 지회 보충교섭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공동투쟁, 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조합원 단결투쟁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임금을 중심으로 전체 지부가 단일한 안으로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상황이라는 여건속에 단사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4. 총괄평가

- 9기2년차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역동적인 정세를 보냈다. 신규지회를 설립하고 직후부터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 전 조합원 단결투쟁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냈고 이 힘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 울산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사를 넘은 투쟁이 필요할 때라고 여기고 국정농단 세력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앞장섰다. 단순히 노동문제 해결 뿐 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런 의미에 맞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끌고 마침내 퇴진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
- 지부는 한반도 자주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의 자주와 평화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드배치 반대투쟁, 한미일 군사협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자 선배들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 잡기위한 '일본강제징용상 건립'운동에 나섰다.
- 2017년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그대로 맞는 해였다. 그러나 지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국가적 문제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교육선전부]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확대간부 교육프로그램 진행
- 2) 조합원 교육의 틀거리 안착화
- 3) 교육선전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위원회 활동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4) 19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조합원 교육사업 진행
- 5) 다양한 선전사업 확대 강화 진행

2. 주요사업 평가

1) 확대간부 교육프로그램 진행

-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간부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내용으로 3개월의 과정으로 준비했다. 다만 진행상에 지회간 편차가 있었고 안정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2) 조합원 교육

- 조합원이 통일적 기조를 가지고 진행하는 성과를 내었다. 다만 전체지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3) 교육선전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위원회 활동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교육선전부 노동자역사교육 총 6회 진행하고 회의 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주기별 집중 간부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선전학교 등 실무학교 진행하였다. 다만 교육위원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4) 19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조합원 교육사업 진행

-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선전부가 각자 지회의 역사도 넣어 자료를 제작하였다.
- 30년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지회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5) 다양한 선전사업 확대 강화 진행

- 웹자보 발행 등의 다양한 선전물을 발행했다.

3. 총괄평가

학습하는 울산지부의 슬로건에 맞게 그 어느 때보다 교육사업에 집중을 하였다.

더욱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에 맞춰 울산지부와 지회역사를 정리해보고 조합원 교육용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가졌다. 이에 맞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선전부 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교육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과 교육 진행에 있어 편차가 있었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로 남았다.

[조직부]

1.사업방향 및 목표

-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2) 지부조직강화사업
- 3)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 4) 취약지회 조직화 지원 및 투쟁사업 지원
-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2.주요사업 평가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정례화함
- 지부 조직부 전투적기풍 강화와 노동운동간부로 육성함
- 담당간부의 비상근, 지회사정으로 고정적으로 불참지회 발생함

2) 지부조직강화사업

- 노동간부 육성
- 지부투쟁지침의 관철기풍 확립
- 투쟁의 현장에서 조직부회의를 실시하고 수련회를 통해 선동프로그램, 간부교육 실시

3)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 상시적인 지회간담회 실시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 지부 지회간 소통망을 통한 원활히 소통됨.
- <금속노동자 청년학교> (울산지역공동운영위원회)
- <금속노동자 청년학교>는 현종하청 고공농성, 동진 공장정상화투쟁등 장기투쟁 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음

○ 신규지회 사업

- 동진지회, 서연씨엔에프지회 신규지회 설립

4) 취약지회 조직화 지원 및 투쟁사업 지원

○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지원 및 투쟁사업 관장

- 열악한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사업장에 지속적인 출.퇴근 투쟁, 지회대자보 제작 지원함
- 현대자동차 촉탁직 조합원에 대한 법률소송비, 투쟁물품, 기자회견 및 선전전 지원함 (10기부터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소속으로 이전됨)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분기별 조직쟁의-문화담당자 연석회의 실시

- 노래문선대 강철3기 운영 지부 결의대회 공연
- 분기별 1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지회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활발한 문화사업을 진행하려하였으나 지회 필요시 문화단체 연결과 문화패 섭외(세종공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노조발행 소책자 보급(전지회 배포), 파업프로그램 보급과 지원(한국프랜지, 서연씨엔에프)에 그침

3. 총괄평가

민중총궐기, 금속노조 총파업투쟁, 노동자대투쟁30주년 기념사업에 지부역량을 총집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었고, 동진지회, 서연씨엔에프지회등 신규지회 설립과 안정화투쟁, 현중하청지회의 장기 고공투쟁에 울산금속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전략 전술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사통계부]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지원 및 8+8 직 도입 방안 마련
- 2) 주간연속 2교대제 8+8 직도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월급제 도입방안
- 3) 통상임금 집단소송 지원
- 4) 교대제위원회 및 조통담당자 집행체계 구축으로 지부의 정책조사역량강화
- 5)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 6) 지부, 지회의 총무, 재정업무의 통일된 기준 정비 및 교육
- 7)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

2. 주요사업 평가

1) 주간연속 2교대제 8+8 직 도입 방안마련에 대하여

- 2016년 1월 현대자동차가 8+8.5 직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직서열사업장 덕양산업, 한온시스템, 서연이화, 세종공업, 한국프랜지 순으로 8+8.5 주간연속 2교대 근무형태 도입과 그에 따른 임금보존을 통한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준 월급제의 기본토대를 구축하였다.
- 지부 산하 부품 사업장들의 8+8 직 도입은 현대자동차가 근무형태 변경 시 협의하기로 기존 협약을 체결한 관계로, 완성차인 현대자동차보다 선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 2017년 현대자동차 교섭에서 8+8 직 도입 사안이, 2018년 교섭과제로 이월하기로 노사가 가합의한 상태이다.
- 2018년 교섭에 8+8 직 도입을 위한 사업장별 설비보완투자 및 정원확보투쟁, 통상임금 문제와 휴일근로 연장가산 인정문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무력화와 직무직능급 도입을 위한 자본의 임금체계 개편 공세가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8+8 직 도입과 함께 월급제 도입을 위한 대비가 요구된다.

2) 울산지부 통상임금 집단소송 경과 및 합의내용

사건번호	2013가합122	사건명	임 금
원 고	강관중 외 1,707명	피 고	(주)고강알루미늄, 세종공업(주), 한국프랜지공업(주), (주)서연이화, 덕양산업(주)
재판부	제5민사부		
접수일	2013.01.04	종국 결과	

일 자	내 용	결 과
2013.01.04	소장접수	
2013.01.04	원고들 소송위임장 제출	
2013.05.08	피고대리인 김종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5.09	1차 변론기일(법정 제113호 11:00)	속행
2013.06.27	변론기일(법정 제113호 10:20) 추정기일(추정사유:기록검토를 위하여)	속행
2014.03.24	피고 준비서면제출, 원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임금대장)	속행
2014.03.27	3차 변론기일	속행
2014.07.24	4차 변론기일	속행
2014.10.30	5차 변론기일	속행
2015.03.26	6차 변론기일	속행
2015.07.09	7차 변론기일	속행
2015.09.17	8차 변론기일	속행
2015.11.05	9차 변론기일(2016.01.14. 15시 선고일자 잡음)	속행
2016.01.13	선고연기 재판속행 결정	
2016.03.24	10차재판 재판부 추정기일 (신의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이후 진행)	추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 현재까지 잡지 않고 있음.		

	통상임금 합의내용	비 고
한국ITW울산	교대조 조합원 970만원, 상시 주간자 900만원, 퇴직자 737만원	매각사유
한온시스템울산 사내하청	조합원 700만원	마이테크 대법승소

	통상임금 승소	비 고
말레동현 필터시스템	판결요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휴일근로 연장수당 판단 안함. 2017년 5월 10일 울산지법 승소, 11월 2일 부산고법 승소.	

울산지부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2016년 3월 24일 울산지법이 선고연기를 통해 추정 기일 함으로서, 현재 “신의칙의 개념”으로 인해 회부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야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영분석 및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서연이화, 덕양산업, 세종공업 등 울산지부 산하 9개사업장에 대하여 경영분석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영분석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 파악과 조합원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임.단협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따라서 상시적인 경영 감시 시스템과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책적인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동진지회 노조탄압 대응 지원 및 단협 시정명령 대응

- 글로벌비스와 동진오토텍의 경영분석 결과를 토대로 물량이전을 통한 동진지회 탄압에 대한 자료 분석과 보고서를 발행하여 현대글로벌비스와 동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거래 관계를 정리하여 국회 기자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및 연행자 및 구속자 법률대응을 통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고강알루미늄, 한국프랜지에 대한 노동부울산지청의 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유일교섭단체, 산재자 유가족 우선 채용문제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단협시정명령 의결 요청건은 지역본부와 공동 대응하여, 2월, 7월, 10월에 잡힌 심문일정을 연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일교섭단체 및 퇴직자 자녀우선채용 건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요구사항에 배치되고, 노조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직내의 논의를 통해 노조정신에 맞는 방침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
- 2)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
- 3) 금속울산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4) 지회 일상정치활동 지원

2. 주요사업 평가

1)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토론회 3회 개최
- 전반적인 정치적 무관심으로 지회 정치위원에서 참가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

2)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

- 금속울산지부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를 위한 정치실천단 구성과 실천계획, 울산지역공동운영위 사업에서 실천단 유세차량 운영계획까지 수립했으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부재로 인해 유의미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3) 울산지부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정치토론회 지부정치위원 조직하여 토론 참가
- 울산지부 자체 계획은 동진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장기투쟁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집행하지 못함

4) 지회 일상정치활동 지원

- <제2회 노동자 정치학교>는 실시하지 못했으나 지부-지회 정치위원 및 지회간부 일상적인 간담회로 대체함.
- 9-1년차 성과적으로 진행된 바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 일상정치사업으로 계획된

울산지역공동운영위원회 주관의 <팟캐스트> 초청 토론회는 토크콘서트로 변경, <김제동의 사이다콘서트>를 진행하여 1,500 조합원 및 가족 울산시민들의 대거 참여하는 성과

- 토크콘서트 주변행사로 투쟁사업장선전, 탈핵선전부스 운영으로 지역사회단체 참여함

3. 총괄평가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의 부재는 대통령선거를 즈음한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승리감을 주지 못하고 보수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반쪽 승리의 결과를 낳았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할 때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과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정치위원회의 지역지부 차원의 노력에도 진일보한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미비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2) 비정규직단위 지회 강화
- 3)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 집행
- 4) 미조직공단 조직사업 강화

2. 주요사업 평가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지회별 미비위원 미선출로 미비위원회의 회의가 이뤄지지 못함. 각 지회별 미비위원 선출이 필요함.

2) 비정규직단위 지회 강화

- 동진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부 및 각연맹의 연대를 통하여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 이후 조직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한온시스템울산사내하청지회의 계열사 조직화에 지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3)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진행

- 금속노조 전략조직화사업 공모에 선전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향후 금속노조 전략조직화사업 공모 신청 및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사업에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진행.

4) 미조직공단 조직사업 강화

- 동진지회의 투쟁으로 전반적인 효문공단 및 자동차 부품업체의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 동진지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조직화를 강화시키고 지부의 체계적인 계획 필요. 서연씨엔에프지회와 연계해 두서공단의 선전전 강화 필요.
- 조선소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의 공동사업 필요.

3. 총평

각 지회별 미비위원선출을 적극화 하여 미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2년차에 금속울산공투단(지부,동진지회,현중사내하청지회,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푹푹 뭉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진지회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투쟁승리를 이끌어낸 교훈을 바탕으로 이후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소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함.

[통일위원회]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역사기행 대중적 확대
- 2)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국방자주권 되찾는 투쟁 전개
- 3)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 4) 금속노조 수임사업

2. 주요사업 평가

1) 역사기행 대중적 확대

- 4.3 역사기행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향상시켜왔다.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친일분단적폐세력들에 받았던 피눈물의 역사의 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임을 제대로 알리고 재조명하였다. 여행이 아닌 역사를 바로 보는 기행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지난시기 기행준비는 다른지부의 모범이 되었다.

2)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국방자주권 되찾기 투쟁

- 한미일 군사동맹의 허구성을 알려내고 국방자주의 의미를 깨우고 되찾는 교육 및 다양한 실천 활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없이 노동자의 자주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 반대 실천활동과 성주 지킴이 투쟁등에 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조직하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한미일전쟁연습 군사훈련 반대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장을 넘어선 자주권 되찾기 투쟁을 진행하였다.

3)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 남북노동자통일축구 개최 등 다양한 교류사업의 물꼬를 트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전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성사해내지 못했다.

4) 일본강제징용상 건립사업

- 노동자선배열사들의 강제징용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교육 및 상 건립사업에 나섰다. 일본강제징용역사관 탐방 및 지회별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위 사업의 일환으로 ‘군함도’ 공동상영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제대로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되게 하였다.

3. 총괄평가

2017년은 그야말로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일분단적폐세력들이 민중들을 탄압하며 국정농단을 일삼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해였다. 또한 사대매국의 늪에 빠져 민족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세력들로 인해 국가가 피해를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오는가 인식하게 해준 해였다. 이에 지부 통일위원회는 민족의 평화와 자주를 침해당하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도,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간부와 조합원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아직도 특정시기만 통일위원회 사업이 진행되는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는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체계를 강화 안정화하고 공동사업과 연대투쟁을 실현한다.
- 2) 부.지회의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건강권 대책투쟁을 활성화한다.
- 3) 2016년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추진 현황 실태조사 후속대책 마련
- 4) 2016년~2017년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개선 활동
- 5) 산재은폐 근절투쟁
- 6) 법제도 개악에 따른 산재노동자 권리확보와 일상적인 투쟁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책위 활동에 적극 복무한다.
- 7)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 활성화.
- 8) 산재보험법 제도개혁 및 안전보건 권리확보 투쟁의 전면화.
- 9) 금속노조 사업 조직 및 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2. 주요사업 평가

- 1)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울산산추련] 활동체계
- 정기회의(11회), 수련회(2회)를 진행하였다.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공동 예산과 공동 활동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
- 2)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현장안전점검, 교육선전 사업 등] 활성화 및 현장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
- 노동안전보건위원 역량강화 교육 / 조합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였다.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조합원 선전전 및 집회 등 실천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말레동현필터시스템은 노조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3)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후속대책
-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9기 1년차에 (2016년) 진행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후속대책은 지부 소속 지회 사업장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기에 사업장별 점검을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

4) 위험성평가 및 작업장 개선활동

- 금속노조 관리카드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사업장은 고강알루미늄과 서연씨엔에프다. 서연씨엔에프는 노조의 지침대로 지부가 참여하여 전 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작업장 공동 감소대책 노사 합의사항 6항목에 대해 8월 11일 노사가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부서공정별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5) 산재은폐 근절투쟁

- 2013년~2015년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진행한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통한 고소·고발로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되어 산재은폐를 한 자와 해당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이 되었다.(2017년 10월 19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10조 동법 시행규칙 4조[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요양 4일에서 휴업요양 3일로 개정됨으로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면 무조건 출근을 요구받게 되고 결국 재해자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로 나가고 나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 산재은폐 무수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이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 이에 휴업요양 3일로 인한 제도적인 허점에 대한 사례 11건과 산재은폐 사례 60건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산지청에 고발을 진행하였다. 중앙 차원의 기자회견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면담 진행과 국정감사에 대응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시행규칙 4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공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시행규칙 4조 시행에 대해 산재은폐 사업주 및 교사, 공모자에 대한 조사 및 고발 투쟁과 산재은폐 가중처벌 요구 및 제도 개선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임의적이 아닌 반드시 산재은폐 시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6) 노동안전보건 법제도개악 분쇄 및 권리확보 투쟁

-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비롯한 안전보건 법제도 개악과 공공성 파괴에 맞선 조직적 실천과제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 대책위는 특수직종노동자(집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건강권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의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7)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

- 산재상담을 통해 산재신청과 사업주 허위 진술에 대한 노동지청 고발투쟁 등 지부 소속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및 노동지청 항의방문을 통해 전원 승인을 이끌어 내었다.

-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공동사업으로 4월에 진행한 산재불승인 부당사례 대응 투쟁을 공단지사와 본부 면담과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8) 금속노조 사업집행 및 조직화 과제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주요사업 조직 및 집행을 위해 현장활동을 진행하였다.

9) 울산지역 공동운영위원회 사업

- 안전한 울산 만들기 위한 탈핵 사업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시민·조합원 선전전과 100만서명운동, 판도라 영화상영, 탈핵활동가 “나스비”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3. 총괄 평가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 활동체계는[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공동예산과 공동활동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기회의와 수련회 등 공동 투쟁이 상시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성과이다.
- 위험성평가는 서연씨엔에프가 노조의 지침대로 진행을 하였으며 다른 사업장에 비해 모범이 되고 있다.
- 산재은폐 근절투쟁은 산재은폐 제도 개선 투쟁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 대책투쟁에 있어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는 특수직종노동자(집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건강권 실태를 폭로함으로 사회적 의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상 사업 관련 평가를 보면서 9기 2년차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사업장별 편차를 줄여 나가는 할 것이며, 서연씨엔에프 위험성평가는 타 지회도 서연씨엔에프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사업도 직서열 사업장은 진행이 되지 않은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인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체계가 안정화 되어 있다는 것이 활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2008년 산재법 개악투쟁을 권역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지역 대책위의 활동이 정례화·체계화 되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권역 투쟁과 지역 투쟁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권역과 지역 투쟁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으며 또한, 산재은폐 근절투쟁은 울산에서 투쟁을 시작하여 제도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노동안전보건 투쟁에 모범이 되고 있다.

울산지부 9기 2년차 4/4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7년 10월 12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강 수 열 (인) 사무국장 조 일 래 (인)
총무부장 이 정 현 (인)

2017년 10월 12일

지부 감사위원 : 김 병 권 (인)
김 진 엽 (인)

감사위원 : 원 대 연 (인)

박 재 근(인)

이 문 수 (인)

전 경 호 (인)

노 한 균(인)

금 재 호(인)

■ 9기 2년차 1/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2			

■ 9기 2년차 1/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9기 2년차 2/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조사통계부	- 감사준비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바랍니다.	-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 9기 2년차 2/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9기 2년차 3/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9기 2년차 3/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 9기 2년차 4/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9기 2년차 4/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2		-	-			

울산지부 9기 2년차 4/4분기 결산 보고서

1. 조합원 현황(조합비 납부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명)

월별 지회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 고
1	고강알루미늄지회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4	104	104	
2	덕양산업지회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28	528	528	
3	세종공업지회	484	484	484	474	474	474	474	474	474	473	472	472	
4	한국프랜지지회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39	339	339	
5	한국ITW울산지회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27	127	127	
6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42	142	133	133	132	132	133	132	132	155	155	157	
7	서연이화지회	469	469	469	472	472	472	472	472	472	473	473	473	
8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98	96	104	107	104	104	107	104	104	92	92	91	
9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89	89	89	89	89	89	89	89	89	93	93	93	
10	삼성SDI지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사고지회
11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21	22	22	21	20	20	21	20	20	17	15	17	
13	서연씨엔에프지회	114	114	114	115	115	115	115	115	115	118	118	118	
14	동진지회	133	168	176	126	126	126	126	126	126	84	83	83	
15	개별	18	15	8	16	12	6	16	12	6	22	19	11	
합계		2,682	2,713	2,713	2,667	2,658	2,652	2,667	2,658	2,652	2,636	2,629	2,624	

2. 일반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110,990,790	0	110,990,790	8,414,518	9,296,583	9,366,083	10,049,715	8,775,134	9,422,764	9,486,750	9,374,675	8,951,634	8,873,535	9,022,014	9,450,523	110,483,928	506,862	99.54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수입	잡수입	잡수입	10,000	0	10,000	0	0	1,344	0	0	1,110	0	0	2,125	0	0	3,549	8,128	1,872	81.28
	기타 수입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합계			111,000,790	0	111,000,790	8,414,518	9,296,583	9,367,427	10,049,715	8,775,134	9,423,874	9,486,750	9,374,675	8,953,759	8,873,535	9,022,014	9,454,072	110,492,056	508,734	99.54

3. 특별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투쟁 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13,779,787	0	13,779,787	13,779,787	0	0	0	0	0	0	0	0	0	0	0	13,779,787	0	100
	이월금	투쟁기금 이월금	20,040,001	0	20,040,001	20,040,001	0	0	0	0	0	0	0	0	0	0	0	20,040,001	0	100
	본조 지원금	투쟁 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수입	지부 자체결의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16,000	616,000	1,232,000	0
	잡수입	이자수입	30,000	0	30,000	0	0	5,944	0	0	4,914	0	0	3,902	0	0	2,333	17,093	12,907	56.98
	소 계		33,849,788	0	33,849,788	33,819,788	0	5,944	0	0	4,914	0	0	3,902	0	0	618,333	34,452,881	-603,093	101.8
미조 직 기금	이월금	이월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조직 기금	본조 지원금	15,300,000	0	15,300,000	0	1,700,000	0	13,600,000	0	0	0	0	0	0	0	0	15,300,000	0	100.0
	잡수입	이자수입	0	0	0	0	0	323	0	0	1,348	0	0	1,824	0	0	1,282	4,777	-4,777	0
	소 계		15,300,000	0	15,300,000	0	1,700,000	323	13,600,000	0	1,348	0	0	1,824	0	0	1,282	15,304,777	-4,777	100
합계			49,149,788	0	491,49,788	33,819,788	1,700,000	6,267	13,600,000	0	6,262	0	0	5,726	0	0	619,615	49,757,658	-607,870	101.24

4.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비	이월금	공동 사업 이월금	124,211, 991	0	124,211, 991	124,211, 991	0	0	0	0	0	0	0	0	0	0	0	124,211, 991	0	100
	본조 지급금	공동 사업비	91,955, 478	+19,723, 064	111,678, 542	8,454, 455	8,454, 440	8,694, 363	0	17,568, 413	11,146, 449	0	22,413, 303	10,863, 329	0	10,838, 244	23,580, 620	122,013, 616	-10,335, 074	109.25
	기타 수입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수입	0	0	110,000	0	0	57,004	0	0	65,448	0	0	73,222	0	0	60,205	255,879	-145,879	232.62
합계			216,167, 469	19,723, 064	236,000, 533	132,666, 446	8,454, 440	8,751, 367	0	17,568, 413	11,211, 897	0	22,413, 303	10,936, 551	0	10,838, 244	23,640, 825	246,481, 486	-10,480, 953	104.44

5. 일반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2015년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운 영 비	유 지 비	관리비	3,600,000	+200,000	3,800,000	269,860	0	615,267	0	620,029	346,687	270,829	248,864	320,104	203,869	363,006	325,902	3,584,417	215,583	94.33
		차량유지비	6,600,000	+1,700,000	8,300,000	1,015,000	1,180,000	500,000	310,000	410,000	1,594,845	410,000	460,000	612,750	415,000	240,000	546,000	7,693,595	606,405	92.69
		신문도서비	600,000	0	600,000	0	0	360,000	0	0	0	0	0	0	0	0	0	360,000	240,000	60.00
		소모품비	2,500,000	-500,000	2,000,000	0	0	29,900	162,150	20,000	183,000	96,900	0	40,000	126,050	320,400	521,900	1,500,300	499,700	75.02
		통신비	2,700,000	0	2,700,000	139,010	214,890	204,360	208,510	126,050	155,220	142,480	145,650	211,050	178,730	180,710	139,840	2,046,500	653,500	75.80
		비품비	1,000,000	+300,000	1,300,000	0	0	427,320	0	0	0	0	0	0	650,000	0	0	1,077,320	222,680	82.87
		인쇄비	100,000	0	1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00	0.00
		기타유지비	600,000	0	600,000	50,000	0	0	82,200	0	0	0	0	0	70,750	0	0	202,950	397,050	33.83
	항의 소계		17,700,000	+1,700,000	19,400,000	1,473,870	1,394,890	2,136,847	762,860	1,176,079	2,279,752	920,209	854,514	1,254,654	1,573,649	1,104,116	1,533,642	16,465,082	2,934,918	84.87
	복리 후생 비	복리후생비	19,652,000	0	19,652,000	1,463,350	1,442,550	1,618,700	1,519,800	2,196,700	1,442,200	1,479,000	1,502,400	1,452,500	1,564,100	1,389,600	1,395,000	18,465,900	1,186,100	93.96
		항의 소계	19,652,000	0	19,652,000	1,463,350	1,442,550	1,618,700	1,519,800	2,196,700	1,442,200	1,479,000	1,502,400	1,452,500	1,564,100	1,389,600	1,395,000	18,465,900	1,186,100	93.96
	업무 추진 비	직무활동비	12,000,000	0	1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0	0	100.00
		항의 소계	1,200,000	0	1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000,000	0	100.00
	관의 소계		49,352,000	+1,700,000	51,052,000	3,837,220	3,837,440	4,755,547	3,282,660	4,372,779	4,721,952	3,399,209	3,356,914	3,707,154	4,137,749	3,493,716	3,928,642	46,930,982	4,121,018	91.93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8,568,000	0	8,568,000	558,600	689,425	276,000	941,100	716,600	1,062,900	858,600	320,900	591,200	467,000	294,200	161,000	6,937,525	1,630,475	80.97
		항의 소계	8,568,000	0	8,568,000	558,600	689,425	276,000	941,100	716,600	1,062,900	858,600	320,900	591,200	467,000	294,200	161,000	6,937,525	1,630,475	80.97
	회의 비	총회	2,500,000	+500,000	3,000,000	683,990	445,000	0	0	0	0	0	0	136,000	0	120,000	1,047,300	2,432,290	567,710	81.08
		대의원 대회	6,000,000	0	6,000,000	0	0	4,104,000	0	206,000	1,690,000	0	0	0	0	0	0	6,000,000	0	100.0
		운영 위원회	1,400,000	0	1,400,000	0	288,000	300,000	0	0	0	0	0	0	150,000	0	0	738,000	662,000	52.71
		집행 위원회	1,000,000	0	1,000,000	0	0	0	0	0	150,000	0	0	0	120,000	0	150,000	420,000	580,000	42.00
		기타 회의비	300,000	0	300,000	0	0	0	50,000	0	22,000	0	0	0	0	0	0	72,000	228,000	24.00
		항의 소계	11,200,000	+500,000	11,700,000	683,990	733,000	4,404,000	50,000	206,000	1,862,000	0	0	136,000	270,000	120,000	1,197,300	9,662,290	2,037,710	82.58
	수련 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1,200,000	0	1,2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00,000	0.00
		항의 소계	1,200,000	0	1,2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00,000	0.0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부서 사업 비	총무 사업비	1,000,000	0	1,000,000	30,000	30,000	6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80,000	520,000	48.00
	조직 사업비	6,000,000	0	6,000,000	400,000	222,000	707,150	356,700	830,040	454,320	466,840	341,050	0	851,900	646,000	490,190	5,766,190	233,810	96.10
	노안 사업비	2,000,000	+500,000	2,500,000	0	376,000	259,000	114,000	440,000	160,000	0	300,000	79,000	0	195,000	318,430	2,241,430	258,570	89.66
	교육 사업비	2,500,000	0	2,500,000	360,000	300,000	500,000	300,000	0	300,000	210,000	0	0	0	0	0	1,970,000	530,000	78.80
	선전 사업비	6,000,000	+500,000	6,500,000	271,600	462,000	264,000	308,000	434,000	19,800	766,920	1,851,650	548,000	1,088,000	0	308,000	6,321,970	178,030	97.26
	조사통계 사업비	3,000,000	-1,000,000	2,000,000	0	36,000	0	0	0	0	79,000	0	32,000	319,140	79,000	81,000	626,140	1,373,860	31.31
	문화체육 사업비	2,000,000	0	2,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0,000	0.00
	항의 소계	22,500,000	0	22,500,000	1,061,600	1,426,000	1,790,150	1,118,700	1,744,040	974,120	1,562,760	2,532,700	699,000	2,299,040	960,000	1,237,620	17,405,730	5,094,270	77.36
연대 사업 비	대외 협력비	2,500,000	0	2,500,000	100,000	27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	248,679	20,000	200,000	350,000	160,000	1,748,679	751,321	69.95
	항의 소계	2,500,000	0	2,500,000	100,000	27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	248,679	20,000	200,000	350,000	160,000	1,748,679	751,321	69.95
	통일 위원회	3,000,000	+300,000	3,300,000	0	0	80,000	60,000	389,100	439,400	843,000	102,000	96,300	200,000	560,000	210,000	2,979,800	320,200	90.3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위 원 회	정치 위원회	3,500,000	-300,000	3,200,000	126,000	0	45,000	0	0	0	39,500	0	0	0	670,000	20,000	900,500	2,299,500	28.14
	여성 위원회	300,000	0	3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0,000	0.00
	미비 위원회	3,000,000	0	3,000,000	0	60,000	47,000	156,000	0	50,000	365,000	0	273,680	90,450	146,200	154,500	1,342,830	1,657,170	44.76
	단협 위원회	600,000	0	600,000	0	0	30,000	0	0	0	30,000	0	100,000	0	0	0	160,000	440,000	26.67
	감사 위원회	600,000	0	600,000	184,060	0	0	229,000	0	0	11,000	0	0	111,000	0	0	535,060	64,940	89.18
	항의 소계	11,000,000	0	11,000,000	310,060	60,000	202,000	445,000	389,100	489,400	1,288,500	102,000	469,980	401,450	1,376,200	384,500	5,918,190	5,081,810	53.80
	집회 행사 비	2,000,000	0	2,000,000	0	1,015,000	132,000	0	95,500	55,000	520,000	0	0	0	0	0	1,817,500	182,500	90.88
	항의 소계	2,000,000	0	2,000,000	0	1,015,000	132,000	0	95,500	55,000	520,000	0	0	0	0	0	1,817,500	182,500	90.88
	관의소계	58,968,000	+500,000	59,468,000	2,714,250	4,193,425	6,904,150	2,654,800	3,251,240	4,543,420	4,229,860	3,204,279	1,916,180	3,637,490	3,100,400	3,140,420	43,489,914	15,978,086	73.13
예 비 비	예비비	2,680,790	-2,200,000	480,790	0	0	0	0	0	0	0	0	0	0	0	0	0	480,790	0.00
	항의소계	2,680,790	-2,200,000	480,790	0	0	0	0	0	0	0	0	0	0	0	0	0	480,790	0.00
	관의 소계	2,680,790	-2,200,000	480,790	0	0	0	0	0	0	0	0	0	0	0	0	0	480,790	0.00
합계		111,000,790	0	111,000,790	6,651,470	8,030,865	11,659,697	5,937,460	7,624,019	9,265,372	7,629,069	6,561,193	5,623,334	7,775,239	6,594,116	7,069,062	90,420,896	20,579,894	81.46

6. 특별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투쟁 기금	투쟁기금	투쟁 사업비	33,849,788	0	33,849,788	2,195,100	3,408,850	2,571,130	1,066,400	3,528,460	-86,920	1,411,440	1,921,000	5,012,320	1,434,300	-43,900	0	22,418,180	11,431,608	66.23
미조직 기금	미조직 사업	공단 조직화 사업비	15,300,000	0	15,300,000	0	1,700,000	0	1,700,000	1,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11,200,000	4,100,000	73.2
지부 결의금	지부 사업비	지부 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49,149,788	0	49,149,788	2,195,100	5,108,850	2,571,130	2,766,400	5,378,460	763,080	2,261,440	2,771,000	5,862,320	2,284,300	806,100	850,000	33,618,180	15,531,608	68.40

7.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역공동 사업비	이월금	공동 사업 이월금	124,211,991	0	124,211,991	0	0	0	0	0	0	0	0	0	0	0	0	0	124,211,991	0
	본조 지급금	공동 사업비	91,955,478	+19,723,064	111,678,542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7,859,552	92.96
	기타 수입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 수입	110,000	0	11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0,000	0
합계			216,277,469	19,723,064	236,000,533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132,181,543	43.99

8.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일반회계		110,492,056	90,420,896	20,071,160	81.83
특별회계	투쟁기금	34,452,881	22,418,180	12,034,701	65.07
	미조직기금	15,304,777	11,200,000	4,104,777	73.18
공동회계		246,481,486	103,818,990	142,662,496	114.82
합계		406,731,200	227,858,066	178,873,134	56.02

9.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6년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110,492,056	90,420,896	20,071,160	1002-454-407377	20,071,160	조합비 수입 및 사업비 지출	
					현금보유	0		
	소계	110,492,056	90,420,896	20,071,160	소계	20,071,160		
특별회계	투쟁기금	34,452,881	22,418,180	12,034,701	1002-154-377648	12,034,701	투쟁기금	
	미조직기금	15,304,777	11,200,000	4,104,777	1002-854-387755	4,104,777	미조직사업	
					현금보유	0		
	소계	49,757,658	33,618,180	16,139,478	소계	16,139,478		
공동회계	공동사업비	246,481,486	103,818,990	142,662,496	1002-254-414663	142,662,496	공동사업비	
	소계	246,481,486	103,818,990	142,662,496		142,662,496		
합 계		406,731,200	227,858,066	178,873,134	합계	178,873,134		

1. 울산지부 9기 85차 지부운영위 및 3차쟁대위에서 목관전용 (7/13일 서연이화지회)
2. 울산지부 9기 89차 지부운영위 및 7차쟁대위에서 목관전용 (8/14일 한국ITW울산지회)

울산지부 9기 2년차 4/4분기 지역공동사업비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7년 10월 12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 부 장 강 수 열 (인) 사무국장 조 일 래 (인)
 조사통계부장 이 정 현 (인)

2017년 10월 12일

울산지부 감사위원 : 김 병 진 (인)

김 진 엽 (인)

손 덕 현 (인)

현자치부 감사위원:

주 용 관 (인)

김 칠 규 (인)

오 영 성 (인)

현중지부 감사위원

김 규 진 (인)

최 영 록 (인)

조합 감사위원:

원 대 연 (인)

박 재 근 (인)

이 문 수 (인)

전 경 호 (인)

노 한 균 (인)

금 재 호 (인)

■ 9기 2년차 4/4분기 지역공동사업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9기 2년차 4/4분기 지역공동사업비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1. 공동회계(지역공동사업비) 수입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 비	이월금	공동 사업 이월금	124,211, 991	0	124,211, 991	124,211, 991	0	0	0	0	0	0	0	0	0	0	0	124,211, 991	0	100
	본조 지급금	공동 사업비	91,955, 478	+19,723, 064	111,678, 542	8,454, 455	8,454, 440	8,694, 363	0	17,568, 413	11,146, 449	0	22,413, 303	10,863, 329	0	10,838, 244	23,580, 620	122,013, 616	-10,335, 074	109.30
	기타수입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 수입	110,000	0	110,000	0	0	57,004	0	0	65,448	0	0	73,222	0	0	60,205	255,879	-145,879	0
합계			216,277, 469	19,723, 064	236,000, 533	132,666, 446	8,454, 440	8,751, 367	0	17,568, 413	11,211, 897	0	22,413, 303	10,936, 551	0	10,838, 244	23,640, 825	246,481, 486	-10,480, 953	104.44

2. 공동회계(지역공동사업비) 부서별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16년 10월	11 월	12 월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회의 사업비	회의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항의소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부서 위원회 사업비	교육 사업비	13,000,000	0	13,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000,000	0.00
		통일 사업비	20,000,000	0	20,000,000	0	0	0	0	0	0	0	0	0	0	0	13,963,000	0	0	20,000,000	0.00
		노안 사업비	19,340,000	+250,000	19,590,000	0	0	0	0	0	5,472,500	92,000	2,755,000	0	0	0	0	0	8,319,500	11,270,500	42.47
		정책 사업비	12,200,000	0	12,200,000	0	0	0	0	0	0	1,488,660	6,200,000	0	0	0	0	2,800,000	7,688,660	4,511,340	63.02
		정치 위원회	38,000,000	-4,000,000	34,000,000	0	0	0	0	0	0	0	0	30,420,850	0	0	0	0	30,420,850	3,579,150	8.95
		여성 위원회	5,000,000	0	5,000,000	0	0	0	0	0	0	0	0	0	0	0	949,000	0	0	5,000,000	0.00
		항의 소개	107,540,000	-3,750,000	103,790,000	0	0	0	0	0	5,472,500	1,580,660	8,955,000	30,420,850	0	14,912,000	2,800,000	64,141,010	39,648,990	61.80	
	단결 강화 사업비	조직 사업비	46,000,000	+24,000,000	70,000,000	0	0	0	0	0	0	0	4,393,320	8,156,260	6,887,990	20,240,410	0	12,549,580	57,450,420	17.93	
	항의 소개	46,000,000	24,000,000	70,000,000	0	0	0	0	0	0	0	4,393,320	8,156,260	6,887,990	20,240,410	0	12,549,580	57,450,420	17.93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미조직 사업비		미조직 사업비	28,000,000	0	28,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28,000,000	0.00	
향의 소계			28,000,000	0	28,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28,000,000	0.00	
적립비		적립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향의 소계	0	0	0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관의 소계			181,540,000	20,250,000	201,790,000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0	35,152,410	2,800,000	96,931,000	104,859,000	48.04
예 비 비	예비비	예비비	34,737,469	-526,936	34,210,533	0	0	0	0	0	0	0	0	0	0	0	0	34,210,533	0.00	
		향의 소계	34,737,469	-526,936	34,210,533	0	0	0	0	0	0	0	0	0	0	0	0	34,210,533	0.00	
		관의소계	34,737,469	-526,936	34,210,533	0	0	0	0	0	0	0	0	0	0	0	0	34,210,533	0.00	
합 계			216,277,469	19,723,064	236,000,533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132,181,543	43.99

3. 공동회계(지역공동사업비)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16년 10월	11 월	12 월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역	지역	지역	216,277,469	+19,723,064	236,000,533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132,181,543	43.99
공동	공동	공동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132,181,543	43.99
사업비	사업	사업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132,181,543	43.99
합계			216,277,469	19,723,064	236,000,533	0	0	0	0	0	5,472,500	1,580,660	13,348,320	38,577,110	6,887,990	35,152,410	2,800,000	103,818,990	132,181,543	43.99

4.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공동회계	246,481,486	103,818,990	142,662,496	42.12

5.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공 동 회 계	공동사업비	246,481,486	103,818,990	142,662,496	1002-254-414663	142,662,496	공동사업비	
	소계	246,481,486	0	142,662,496		142,662,496		

울산지부 9기 2년차 4/4분기 사회공헌기금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7년 10월 12일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 부 장 강 수 열 (인) 사무국장 조 일 래 (인)
조사통계부장 이 정 현 (인)

2017년 10월 12일

울산지부 감사위원 : 김 병 진 (인)

김 진 엽 (인)

조합 감사위원 : 원 대 연 (인)

박 재 근 (인)

이 문 수 (인)

전 경 호 (인)

노 한 균 (인)

금 재 호 (인)

1. 사회공헌기금 납부현황

기간: 2016 10월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명)

월별 지회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고강알루미늄	198,000	200,000	200,000	202,000	200,000	200,000	198,000	198,000	194,000	194,000	196,000	194,000	2,374,000
덕양산업	1,054,000	1,056,000	1,056,000	1,056,000	1,054,000	1,056,000	1,052,000	1,054,000	1,050,000	1,048,000	1,048,000	1,048,000	12,632,000
세종공업	0	1,922,000	1,920,000	946,000	0	944,000	1,888,000	0	1,884,000	0	1,884,000	0	11,388,000
한국프랜지	680,000	680,000	678,000	678,000	660,000	660,000	662,000	660,000	676,000	678,000	678,000	1,019,000	8,409,000
한국TW	254,000	254,000	255,000	252,000	248,000	248,000	248,000	248,000	248,000	250,000	250,000	250,000	3,005,000
한온시스템울산	274,000	272,000	264,000	266,000	262,000	264,000	298,000	308,000	308,000	312,000	312,000	312,000	3,452,000
서연이화	938,000	936,000	934,000	934,000	912,000	910,000	906,000	894,000	904,000	902,000	922,000	922,000	11,014,000
예금결산이자	0	0	52,863	0	0	57,073	0	0	62,543	0	0	68,044	240,523
합계	3,398,000	5,320,000	5,359,863	4,334,000	3,336,000	4,339,073	5,252,000	3,362,000	5,326,543	3,384,000	5,290,000	3,813,044	52,514,523

■ 9기 2년차 4/4분기 사회공헌기금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

■ 9기 2년차 4/4분기 사회공헌기금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	-			

1. 사회공헌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 률 (%)
관	항	목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사 회 공 헌 사 업 비	이월금	사회 공헌 이월금	117,265,665	0	117,265,665	117,265,665	0	0	0	0	0	0	0	0	0	0	0	117,265,665	0	100
	사회 사업비	사회 사업비	0	0	0	3,398,000	5,320,000	5,307,000	4,334,000	3,336,000	4,282,000	5,252,000	3,362,000	5,264,000	3,384,000	5,290,000	3,745,000	52,274,000	-52,274,000	0
	기타 수입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잡수입	이자 수입	0	0	0	0	0	52,863	0	0	57,073	0	0	62,543	0	0	68,044	240,523	-240,523	0
합계			117,265,665	0	117,265,665	120,663,665	5,320,000	5,359,863	4,334,000	3,336,000	4,339,073	5,252,000	3,362,000	5,326,543	3,384,000	5,290,000	3,813,044	169,780,188	-52,514,523	144.78

2. 사회공헌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16년 10월	11월	12월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사회 공헌 사업비	사회 공헌 사업비	사회 공헌 사업비	117,265,665		117,265,66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합계			117,265,665		117,265,66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3.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사회공헌사업비	169,780,188	0	169,780,188	0.00

4.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공 동 회 계	사회공헌사업비	169,780,188	0	169,780,188	1002-654-414673	169,780,188	공동사업비	
	소계	169,780,188	0	169,780,188		169,780,188		

의결주문

제출된 ‘10기 1년차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부 10기 1년차 사업계획 안]

1. 사업기조

- 1) 제 2의 민주노조 운동 시작!
- 2) 지부지회 일심단결! 전 조합원 단결투쟁 강화!
- 3) 노동적폐 청산, 노동중심 새세상 건설!

2. 사업방향과 목표

- 1) 제 2의 민주노조 운동 시작!
- 2)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3) 노동자 중심 진보대통합 건설!
-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5) 지역 및 사회연대 강화!

3. 세부사업계획

(1) 제 2의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하자!

- 87년 이후 노동조합,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제2의 노동운동을 시작
- 집행체계를 정비하고 강화, 일사분란 집행력 안정화
- 지부지회 소통을 강화
- 노동자 단결투쟁 체계 강화, 현장 조직력 강화

(2)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9기 집행의 성과를 발판으로 미조직 금속노동자 조직 및 지회 설립
- 조선, 부품사, 공단 금속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3) 노동자 중심 진보대통합 건설!

-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후보당선을 넘어 지역에서 노동자 직접정치의 기틀을 마련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

- 현장과 함께 하는 자주통일 사업체계 구축
- 사드배치 철회, 전쟁책동 분쇄 투쟁 전개
- 친일분단적폐세력 청산 투쟁 전개

(5) 지역·사회연대 강화

- 제 진보세력과의 연대활동 강화

[각 부서, 위원회 사업계획 안]

[조직부]

1. 사업방향 및 목표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정례화
- 지부 조직부 전투적기풍 강화와 실천형 노동운동간부로 육성

2) 지부조직강화사업

- 실천형 노동간부 육성 프로그램 실시
- 지부투쟁지침의 관철기풍 확립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상시적인 지회간담회 실시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 신규지회 사업

4) 취약지회 조직화 지원 및 투쟁사업 지원

-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지원 및 투쟁사업 관장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분기별 문화담당자 연석회의 실시

2. 사업 계획

1) 조직쟁의담당자회의 내실화

- 월1회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사수
- 조직쟁의담당자 역량강화와 단결력 높이기 위한 조직간부수련회 개최
- 투쟁과 교육의 효율적 배치로 지회 조직담당자 전투적 기풍 쇄신
- 조직담당자 선동능력 배양 교육 실시
- 회의 개최는 지회와 투쟁사업장 순회방식으로 개최
-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조직실과 연계강화로 울산지역 공동투쟁의 조직력 복원

2) 지부조직강화사업

- 수련회, 정례회의를 통한 노동간부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회 관장력 강화로 지부 투쟁지침의 관철기풍 확립
- 일사불란한 투쟁대오 확립, 투쟁조끼착용 및 정연한 투쟁 체계 구축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로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력 강화

3) 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상시적인 지회-지부 조직쟁의담당자간 소통 및 업무 지원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로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력 강화
- 신규 노동조합 상담 및 조직화

4) 취약지회 조직화 지원 및 투쟁사업 지원

- 신규 지회의 투쟁 지원 및 연대투쟁 체계 구축
- 현중일반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동진지회, 삼성SDI 등 조직기반 취약 지회의 지속적 관리와 조직역량 확대를 위한 전술회의, 교육 배치

5) 지부 문화사업 지원

- 지부 지회의 '노동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 분기별 조직쟁의-문화담당자-문화단체 연석회의 및 수련회 실시
- 조합원 참여형 집회문화 연구
- 노래문선패 강철 4기 구성 및 지원

[교육선전부]

1. 사업방향 목표

- 1) 제2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안착화
- 2)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사업
- 3) 교육위원회 활동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4)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

2. 사업 계획

1) 조합원 및 간부 육성 교육프로그램 진행

- 조합원 교육을 통일적 기조로 진행
- 신입간부 교육 및 중견간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안착화

2) 교육선전부 안정화 및 역량강화

- 회의 정례화
- 선전학교 등 부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3) 교육위원회 활동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교육위원회 정기적 회의 안정화
- 각각에 맞는 분야별 전문성 강화

4) 다양한 선전사업 확대

- 카드뉴스 등 웹자보 발행
- 유인물, 대자보 정기적 발행

[총무부]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2) 지회 회계 프로그램(쾌산자) 및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 업무 집행
- 3) 지부. 지회 각종 사안에 대한 법률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지원 사업
- 4) 통상임금 집단 대표소송 지원
- 5) 지부감사위원회 사업지원
- 6)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2. 사업 계획

1) 지부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노조 회계프로그램 사용지원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총무 회계담당자 분기 회의 개최와 수련회 개최한다.

2) 지회 회계 프로그램(쾌산자) 및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 업무 집행

- 지회 회계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을 통하여 회계규정 통일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률역량 강화로 각 사안에 대한 법률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강화

- 각 부서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통한 원활한 업무가 집행 되도록 한다.
- 법률학교 개최를 통한 단체협약 관련 노동법 교육
- 총무 회계담당자 분기 회의 안정적 개최와 반기별 수련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

4) 통상임금 대표소송 지원

- 통상임금 대표소송 진행 법률원 지원 사업 수립
- 소송에 소요되는 각종 근거자료 입안

5)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및 일상적 경영감시 체계 구축

- 경영분석 중급 실무교육
- 지회별 경영분석 및 경영참여 및 감시방안 마련

[통일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역사기행 대중적 확대
- 2) 전쟁훈련 반대투쟁, 반전평화 운동, 평화협정 체결운동 전개
- 3) 남북노동자 교류사업과 8.15 통일선봉대 조직화 사업
- 4) 지부통일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역량강화 사업
- 5) 금속노조 수임사업

2. 사업 계획

1) 역사기행 대중적 확대

- 4.3 등 역사기행 진행
- 일본강제징용 등 역사를 바로 알리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역사기행을 진행

2) 반전평화 운동, 전쟁훈련 반대투쟁, 평화협정 체결운동 전개

- 한미일 군사동맹의 허구성을 알려내고 한반도 전쟁 반대 투쟁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전개

3) 남북노동자 교류사업과 8.15 통일선봉대 조직화 사업

- 남북노동자 통일축구 개최 등 교류사업
- 통일선봉대 조직

4) 지부통일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역량강화

- 월 1회 회의 정례화
- 지부통일위원 일상적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금속노조 수임사업

[미비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2) 비정규직단위 지회 강화
- 3) 미조직공단 조직사업 강화

2. 사업계획

1) 미조직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교육진행

- 월 1회 회의 정례화/반기별 1회 미조직비정규직위원 교육진행

2) 교육선전사업

- 공단노동자 학교개최
- 온산, 장생포 선전활동 분기별 1회 진행
- 비정규직단위 교육 활동

3) 비정규직단위 지회 강화

- 조합원 교육 및 실천 활동 진행
- 일상적 노조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미조직 공단조직화 사업

- 효문 공단 및 자동차부품 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및 조직활동
- 미조직 사업의 주체 발굴을 위한 사업진행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선전사업진행
- 조선소사내하청노동자 조직을 위한 현대중공업지부와와의 공동사업

[정치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2018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
- 2) 금속울산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3) 지회 일상정치활동 지원

2. 사업 계획

1) 2018년 지방자치선거 선거에서 진보정치 승리

- 금속울산지부 지자체선거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 진보정치 승리를 위한 선거 지원책 마련
- 진보정당 초청 간담회

2) 울산지부 정치위원회의 안정화

- 금속노조,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치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 지부 정치위원회의 월1회 정례화
- 지부 정치위원의 정치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배치, 수련회 실시

3) 지회 일상정치활동 지원

- 지부-지회 정치위원 및 지회간부 일상적인 간담회 실시
- 제2회 <팟캐스트> 또는 제2회 <정치토크콘서트> 실시 (울산지역공동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여성위 회의 주기적 개최
- 2) 여성간부 발굴육성 사업
- 3) 금속노조 수임사업

2. 사업계획

1) 여성위 회의 주기적 개최

2) 여성간부 발굴 육성 사업

- 교육, 영화상영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여성간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
- 지역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한 여성노동자 활동을 다양하게 만들어 간다.

3) 금속노조 수임사업

- 3.8여성의 날
- 성평등 실현, 성폭력 예방, 성차별 해소 사업 강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체계를 강화 안정화하고 공동사업과 연대투쟁을 실현한다.
- 2) 지부.지회의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건강권 대책투쟁을 활성화한다.
- 3)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활동
- 4) 산재은폐 근절투쟁 진행.
- 5) 법제도 개악에 따른 산재노동자 권리확보와 일상적인 투쟁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대책위원회에 적극 복무한다. 하청노동자(사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쟁점화를 통한 조직적 실천을 마련한다.
- 6)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대책활동 활성화.
- 7) 산재보험법 제도개혁 및 안전보건 권리확보 투쟁의 전면화.
- 8) 금속노조 사업 조직 및 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

2. 사업계획

1) 조직 및 투쟁사업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 사업장별 작업환경 개선사업 진행: 안전점검 공동 실시 및 후속대책 마련
- 중대재해 및 산재사고 발생시 보고와 대책투쟁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장 개선 활동
- 산재은폐 관련 산업안전보건 개선 투쟁
- 노동안전보건 현안투쟁 및 대책투쟁
- 하청노동자(사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쟁점화를 통한 조직적 실천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 지회 일상활동 강화
- 기타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교육선전사업

- 금속울산 노동안전보건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대시민 선전활동의 강화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기획 교육 및 선전
- 조합원 교육(안전교육시간 활용)
- 노동안전보건 선단지 발행

3) 수임사업

- 금속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
-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및 산재노동자 권리 확보 투쟁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집행
- 노동안전보건 단체와의 연대

4) 건강권 쟁취 대책활동 강화

- 산재보험법 제도개혁과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과 투쟁
: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악 및 규제완화 저지 및 제도개선 투쟁
: 중대재해 사고시 동료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현 실태조사와 처방방안(목격자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국감 시 입법 요구

의결주문

제출된 ‘10기 1년차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기 1년차 지역지부교부금 계산방법입니다.

- (1) 2017년 10월부터 2018년 06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0,6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60,000명입니다.
- (2)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60,000명 X 20,600원 X 0.17 = 210,120,000원 입니다.
- (3)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6개지부에 월 7,200,000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7,200,000원이 지급되면 202,920,000원이 남게 됩니다.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3,382원이 나옵니다.
- (5)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3,557원입니다.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 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 조합원수)이 됩니다.
- (7) 최저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입니다.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구분	2017년 10월~2018년 06월 (월 수입)	2018년 07월~2018년 12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3,382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3,557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x	3,382원 × 지부(납부) 조합비	3,557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월 교부금

- 2017년 10월 ~ 2018년 06월 (월 수입)

$$3,382\text{원} \times 2,644\text{명} = 8,942,008$$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월 수입)

$$3,557 \times 2,644\text{명} = 9,404,708$$

◎ 10기 1년차 교부금 = 136,906,320

- 월 교부금 8,942,008 × 9개월 = 80,478,072 (2017년 10월 ~ 2018년 6월)
- 월 교부금 9,404,708 × 6개월 = 56,428,248 (2018년 7월 ~ 2018년 12월)

2. 10기 1년차 지역공동사업비 계산방법입니다.

< 지역지부 >

- (1) 2017년 10월부터 2018년 06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0,6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60,000명입니다.
- (2) 2018년 06월까지 한달에 지역공동사업비는 60,000명 X 20,600원 X 0.01 = 12,360,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06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3)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16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4)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X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17년 10월~2018년 06월 (월 수입)	2018년 07월~2018년 12월 (월 수입)
지역공동사업비	206원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216원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 울산지부 월 공동사업비

- 206원 × 2,644명 = 544,664원 (2017년 10월 ~ 2018년 06월 (월 수입))
- 216원 × 2,644명 = 571,104원 (2018년 7월 ~ 2018년 12월 (월 수입))

◎ 울산지부 10기 1년차 공동사업비 : 8,328,600원

- 544,664원(월) × 9개월 = 4,901,976
- 571,104원(월) × 6개월 = 3,426,624

< 기업지부 >

- (1) 2017년 10월부터 2018년 06월까지 기업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7,000원 으로 산정합니다. 기업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105,000명입니다.
- (2) 2015년 06월까지 한달 지역공동사업비는 105,000명 X 27,000원 X 0.01 = 28,350,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70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3)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까지 임금인상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83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4) 기업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X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기업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17년 10월~2018년 06월 (월 수입)	2018년 07월~2018년 12월 (월 수입)
지역공동사업비	270원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283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1) 현대자동차지부

◎ 월 공동사업비

- 270원 × 조합원 27,958명 = 7,548,660원 (2017년 10월~ 2018년 6월)
- 283원 × 조합원 27,958명 = 7,912,114원 (2018년 7월 ~ 2018년 12월)

◎ 10기 1년차 공동사업비 : 115,410,624원

- 7,548,660원 × 9개월 = 67,937,940원
- 7,912,114원 × 6개월 = 47,472,684원

2) 현대중공업지부

◎ 월 공동사업비

- 270원 × 조합원 10,353명 = 2,795,310원 (2017년 10월~ 2018년 6월)
- 283원 × 조합원 10,353명 = 2,929,899원 (2018년 7월 ~ 2018년 12월)

◎ 10기 1년차 공동사업비 : 42,737,184원

- 2,795,310원 × 9개월 = 25,157,790원
- 2,929,899원 × 6개월 = 17,579,394원

3)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업지부 판매, 정비위원회 = 2,758,650원

< 10기 1년차 울산지역공동위원회 사업비 >

해당단위	공동사업비	합
울산지부	8,328,600원	169,235,058원
현대자동차지부	115,410,624원	
현대중공업지부	42,737,184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업지부 판매, 정비위원회	2,758,650원	

10기 1년차 예산(안)

【수입지부】

기간 : 2017년 10월 1일~2018년 12월 31일 / 금액 : 136,906,320원

과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 월 교부금 8,942,008 × 9개월 = 80,478,072원 ○ 월 교부금 9,404,708 × 6개월 = 56,428,248원	136,906,320원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0원
	잡수입	잡수입		0원
총계 136,906,320원				

【특별회계 수입현황】

기간 : 2017년 10월 1일~2018년 12월 31일 / 금액 : 36,210,638원

과 목			예산액
관	항	목	
투쟁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20,071,160원
	이월금	투쟁기금이월금	12,034,701원
	본조지원금	투쟁사업비	
	잡수입	이자수입, 해지환급금	
	소 계		
미조직기금	이월금	이월금	4,104,777원
	미조직기금	본조지원금	
	잡수입	이자수입	
	소 계		
합계			36,210,638원

【지출부】

과 목			목번	9기 세부내역	10기 1년차 (15개월)	총액대비 예산율(%)	9기 2년차 (12개월)	집행율 (%)
관	항	목						
운 영 비	유지비	관리비	1	사무실관리비 등 월350.000원*15개월	5,250,000	3.83	3,584,417	94.33
		차량유지비	2	주유,보험,수리등 월600.000원*15개월	9,000,000	6.57	7,693,595	92.69
		신문도서비	3	신문, 자료구입등 50.000월*15개월	750,000	0.55	360,000	60.00
		소모품비	4	소모품,사무용품,토너등	2,500,000	1.83	1,500,300	75.02
		통신비	5	통신비,전화비,우편비용등	3,000,000	2.19	2,046,500	75.80
		비품비	6	비품구입비(컴퓨터, 모니터, 의자등)	2,000,000	1.46	1,077,320	82.87
		인쇄비	7	각종 자료 인쇄	200,000	0.15	0	0.00
		기타유지비	8	커피, 외부인사 방문 등	800,000	0.58	202,950	33.83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9	사무국 식비 월 154.000×8인×15개월 철농, 당직, 식비 등 100.000원×15개월 사무국 건강검진 200.000원×6인 사무국 근무복 70.000원×8인 사무국 직무활동비 월 20,000원×5명×15개월	23,240,000	16.98	18,465,900	93.96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10	직무활동비 1,000.000원*15개월	15,000,000	10.96	12,000,000	100.00
	관의소계				61,740,000	45.10	46,930,982	91.93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1	출장비	10,500,000	7.67	6,937,525	80.97
	회의비	총회	12	공고, 투표용지, 포스터, 선거관리비 등	1,500,000	1.10	2,432,290	81.08
		대의원대회	13	정기대의원대회450만원 임시의원대회 250만원	7,000,000	5.11	6,000,000	100
		운영위원회	14	회의비	2,000,000	1.46	738,000	52.71
		집행위원회	15	회의비	1,500,000	1.10	420,000	42.00
		기타회의비	16		500,000	0.37	72,000	24.00
	수련 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17	교섭위원 수련회	2,000,000	1.46	0	0.00
	부서 사업비	총무사업비	18	부서사업비	2,000,000	1.46	480,000	48.00
		조직사업비	19	조직사업비, 부서사업비, 투쟁사업비	7,000,000	5.11	5,766,190	96.10
		노안사업비	20	부서사업비	3,500,000	2.56	2,241,430	89.66
		교육사업비	21	부서사업비	4,000,000	2.92	1,970,000	78.80
		선전사업비	22	부서사업 소식지, 대자보 현수막 등	7,000,000	5.11	6,321,970	97.26
		문화체육 사업비	23	간부 단합대회 및 조합원 문화사업비	2,500,000	1.83	0	0.0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비	24	타조직 연대 등	3,500,000	2.56	1,748,679	69.95
	위원회	통일위원회	25	통일위 사업비	3,500,000	2.56	2,979,800	90.30
		정치위원회	26	정치위 사업비	4,500,000	3.29	900,500	28.14
		여성위원회	27	여성위 사업비	1,000,000	0.73	0	0.00
		미/비위원회	28	미/비위 사업비	4,000,000	2.92	1,342,830	44.76
		단협위원회	29	단협위 사업비	1,000,000	0.73	160,000	26.67
		감사위원회	30	감사위 사업비	1,000,000	0.73	535,060	89.18
	집회 행사비	집회행사비	31	집회 행사비	3,500,000	2.56	1,817,500	90.88
	관의소계				73,000,000	53.32	42,863,774	73.13
예 비 비	예비비	공동사업비						
		예비비	32	예비비	2,166,320	1.58	0	
합계					136,906,320	100	89,794,756	81.46

의결주문

제출된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을
운영위에 위임해 주실 것을 승인 바랍니다.

1. 10기 1년차 중앙위원 배정기준

지부	2017.07	2017.08	배정인원	중앙위원 수	일반	여성할당	비정규 할당
경남	12,800	13,026	13,026	7	6	1	0
경기	4,794	4,881	4,881	2	2	0	0
경주	3,513	3,512	3,513	2	2	0	0
광전	8,510	8,437	8,510	4	4	0	0
구미	1,121	1,121	1,121	1	1	0	0
대구	2,202	2,197	2,202	1	1	0	0
대충	2,918	2,882	2,918	1	1	0	0
부양	1,789	1,702	1,789	1	1	0	0
서울	1,710	1,286	1,710	1	1	0	0
울산	2,686	2,681	2,686	1	1	0	0
인천	2,820	2,775	2,820	1	1	0	0
전북	1,803	1,840	1,840	1	1	0	0
충남	11,622	11,606	11,622	6	5	1	0
포항	1,811	1,811	1,811	1	0	0	0
기아차	28,221	28,576	28,576	14	13	1	0
한국지엠	13,453	13,361	13,453	7	6	1	0
현대차	50,249	50,232	50,249	25	22	3	1
쌍용차	178		178	1	1	0	0
현대중	12,635	12,366	12,635	6	5	1	0
총계				83	74	8	1

※ 10월 20일 공지된 10기 1년차 조합 대의원 배정기준과 동일(금속선관위 01-17-10-002)

※ 배정기준 조합원수는 2017년 7월, 8월분 조합비 납부인원 중 많은 수를 기준으로 함.

※ 여성, 비정규 등 할당 중앙위원은 할당비율을 반영한 수치를 반올림하여 배정함.

예> 경남지부 : 중앙위원 3명 이상(7명) 배정됐기 때문에 10%이상 할당여성중앙위원과 5%이상 할당 비정규중앙위원을 선출해야 함

① 경남지부 여성할당 중앙위원 : $7 \times 0.1 = 0.7\text{명} \rightarrow 1\text{명}$

② 경남지부 비정규할당 중앙위원 : $7 \times 0.05 = 0.4\text{명} \rightarrow 0\text{명}$

2. 관련 규약·규정

[금속노조 규약]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06. 12. 21 개정, 단서조항 삭제)
-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금속노조 여성 및 비정규,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제5조(할당기준) 할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여성할당

- ①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각 1명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여성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10%이상 여성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10%이상 할당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 ④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2. 비정규할당

- ①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에 1명이상을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비정규 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5%이상 비정규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5%이상 할당 비정규중앙위원을 선출한다.
- ④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의결주문

제출된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을 지부운영위에 위임해 주실 것을
승인 바랍니다.

1.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조합 임원	9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제외
지부별 배정	35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 할당	8	
비정규 할당	3	비정규할당부위원장포함. 해당위원회위임
미전환사업장	2	대우조선노조
합 계	57	

- 민주노총 중앙위원은 조합원 3,0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2017년 6, 7, 9월분 평균) 171,845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에 57명이 배정 됨.
-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6,244명(대우조선 6,000 / 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70 / 삼미금속 104)이고, 민주노총 중앙위원 할당은 2명이 며, 배정은 대우조선(6,000명)에 2명으로 함.
- 나머지 55명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배정함.
 - 여성할당 8명(전체 9.1%이상)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가 큰 순서대로 지부(직할지회)별 1명씩 배정한다.
 - 비정규할당 3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할당 조합 임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 2 명은 비정규특위에 위임한다.
 - 여성, 비정규할당 중앙위원을 제외한 44명은 조합 임원 9명(총 10명 중 비정규할당 부 위원장 제외)을 우선 배정한다.
 - 나머지 35명은 지부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부별로 배정한다.(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값의 총합이 35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4700)
 - 후보중앙위원은 조합 부서장 및 여성사업 담당자로 배정하되 아래 표 순번대로 한다.

순 번	후보 중앙위원
1	조합 총무실장
2	조합 정책기획실장
3	조합 조직실장
4	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5	조합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6	조합 선전홍보실장
7	조합 교육실장
8	조합 대외협력실장
9	조합 여성부장

※ 민주노총 파견중앙위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17년 9월말 감사자료 기준을 사용.

지부명		조합원	전체 배정	중앙위원 구분		
				배정(일반)	여성조합원	배정(여성)
경기		4,915	2	1	652	1
경남		13,185	3	3	239	0
경주		3,397	2	1	571	1
광주전남		8,451	2	2	256	0
구미		1,120	0	0	85	0
대구		2,240	0	0	102	0
대전충북		2,922	1	1	335	0
부산양산		1,893	0	0	238	0
서울		1,767	1	0	437	1
울산		2,676	1	1	227	0
인천		2,866	1	1	172	0
전북		1,846	0	0	93	0
충남		11,616	2	2	184	0
포항		1,777	0	0	13	0
만도		76	0	0	0	0
기아차		28,533	7	6	645	1
쌍용차		178	0	0	0	0
한국지엠		13,364	4	3	855	1
현대차		50,690	12	11	1,793	1
현대중공업		12,728	4	3	450	1
직할 지회	현대차비정규	454	0	0	65	0
	현대차일반직	5	0	0	0	0
	기아차화성비정규	1,471	1	0	509	1
합 계		168,170	43	35	7,921	8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중집	37명	비정규할당 조합 임원 제외
지부 배정(일반)	203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67명	미전환사업장 여성할당 3명 포함
비정규할당	17명	비정규할당 조합 임원 포함. 해당위원회 위임
미전환사업장	10명	여성할당 3명 제외
합계	334명	

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선출 기준은 5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조합원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평균) 171,845명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총 334명임. 통상 민주노총이 금속노조에 설정하는 여성할당 비율(20%)을 기준으로 여성할당 대의원은 67명. 후보 대의원은 20%인 67명임.

2)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6,244명(대우조선 6,000 / 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70 / 삼미금속 104)이므로, 민주노총 대의원 할당 13명(여성할당 3명 포함)을 대우조선노조에 배정한다.

3) 나머지 321명은 지부(직할지회 포함)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① 여성할당중 미전환 사업장 몫 3명을 제외한 64명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지부별로 여성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64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125)

② 비정규할당 17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할당 조합 임원을 선 배정하고, 나머지 16명은 비정규특위로 위임한다.

③ 중앙집행위원 37명을 우선 배정한다.(비정규할당 임원을 제외한 조합 임원 9명 + 지부장 20명 + 부서장 8명)

④ 나머지 203은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 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 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203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822)

⑤ 후보대의원 67명은 지부별 1인씩 총 20명을 지부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47명은 지부 인원수에 비례해 배정하되 지부 이름 가나다 순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매긴다.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17년 9월말 감사자료 기준을 사용.

지부명		조합원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배정(일반)	여성조합원	배정(여성)
경기		4,915	11	6	652	5
경남		13,185	18	16	239	2
경주		3,397	9	4	571	5
광주전남		8,451	12	10	256	2
구미		1,120	2	1	85	1
대구		2,240	4	3	102	1
대전충북		2,922	7	4	335	3
부산양산		1,893	4	2	238	2
서울		1,767	5	2	437	3
울산		2,676	5	3	227	2
인천		2,866	4	3	172	1
전북		1,846	3	2	93	1
충남		11,616	15	14	184	1
포항		1,777	2	2	13	0
만도		76	0	0	0	0
기아차		28,533	40	35	645	5
쌍용차		178	0	0	0	0
한국지엠		13,364	23	16	855	7
현대차		50,690	76	62	1,793	14
현대중		12,728	19	15	450	4
직할 지회	현대차비정규	454	2	1	65	1
	현대차일반직	5	0	0	0	0
	기아차화성비정규	1,471	6	2	509	4
합 계		168,170	267	203	7,921	64

※ 후보대의원 순서

순번	지부	순번	지부	순번	지부	순번	지부	순번	지부
1	경기	15	전북	29	서울	43	현대자동차	57	현대자동차
2	경남	16	충남	30	울산	44	현대중공업	58	기아자동차
3	경주	17	포항	31	인천	45	경남	59	현대자동차
4	광주전남	18	한국지엠	32	전북	46	기아자동차	60	기아자동차
5	구미	19	현대자동차	33	충남	47	충남	61	현대자동차
6	기아자동차	20	현대중공업	34	포항	48	한국지엠	62	기아자동차
7	대구	21	경기	35	한국지엠	49	현대자동차	63	현대자동차
8	대전충북	22	경남	36	현대자동차	50	현대중공업	64	현대자동차
9	만도	23	경주	37	현대중공업	51	경남	65	현대자동차
10	부산양산	24	광주전남	38	경남	52	기아자동차	66	현대자동차
11	서울	25	기아자동차	39	광주전남	53	한국지엠	67	현대자동차
12	쌍용차	26	대구	40	기아자동차	54	현대자동차		
13	울산	27	대전충북	41	충남	55	현대중공업		
14	인천	28	부산양산	42	한국지엠	56	기아자동차		

의결주문

10기 울산지부 감사위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 후보>

- 선출인원: 5명이내
- 3명 후보 각각 찬반

소속	이름	약력
한국프랜지지회	이상순	9기 한국프랜지지회 사무장
세종공업지회	황승연	9기 세종공업지회 사무장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주환	9기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의결주문

기타안전을 심의해주십시오

의결주문

별도로 제출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울산지부 규정

울산지부 규정

제정:2001년 3월 6일

개정:2001년 11월 30일

개정:2008년 3월 3일

개정:2016년 12월 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울산지부의 사무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실내에 두도록 한다.

제4조(설치) 울산지부는 지역지부로서 울산광역시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 지부는 울산지역내의 금속노동자로서 금속노조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 (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

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회별로 조합원 2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1명을 적용한다.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 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부지부장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0기 임원 임기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 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